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2-18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조치 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echnical measures
for preventing the distribution of digital sex-crime
materials

천혜선 외

2022. 12

연구기관 :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조치 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연구기관 : 유한회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총괄책임자 : 천혜선

참여연구원 : 윤금남

노창희

이수연

목 차

요 약 문	v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2장 국내의 유사 입법례 및 사례조사	4
제1절 국내 유사 입법례 분석	4
1. 저작권법 상 기술적 조치 제도	4
2. 개인정보보호법 상 기술적 조치 제도	8
제2절 해외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입법례 분석	14
1. 유럽위원회의 디지털서비스법(DSA)	14
2. 영국의 온라인안전법안(Online Safety Bill)	19
3.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	22
제3장 기술적 조치 운영 현황 및 개선 요구사항 분석	30
제1절 기술적 조치 도입 현황 및 평가	30
1. 조치의무사업자 지정 및 필터링 적용 현황	30
2. 조치의무 이행 현황과 애로사항 평가	32
제2절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개선 요구사항 분석	45
1. 신고 접수된 영상물의 처리 및 민원 대응 지원	45
2. 유해단어 기준 마련에 대한 지원	46
3. 필터링 조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확대	46

4. 조치의무 이행으로 인한 비용 부담 지원	47
5. 기타 요구사항	48

제4장 디지털성범죄물 등 유통방지 관련 정책환경 변화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51

제1절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관련 정책환경 분석	51
1.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인식 및 삭제	51
2.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 동향	52
제2절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제도개선 방안 검토	55
1.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확대	55
2. 필터링 인정기준 검토	61
3. 오검출 관련 면책규정의 기준과 범위 개정	63
4. 불법촬영물 영상의 방심위 전달 후 삭제 허용	70
5. 조치의무 이행 활동 독려를 위한 지원 방안	72

참고문헌85

표 목 차

<표 2-1>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5
<표 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관련 사항	7
<표 2-3> 개인정보보호법 상 안전조치의무	8
<표 2-4> 개인정보보호법 상 안정성 확보조치	9
<표 2-5> 기준 적용 대상	10
<표 2-6> 과징금 부과 근거	11
<표 2-7>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유형과 적용사업자 현황	16
<표 2-8> 영국 온라인 안전법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칙과 체크리스트	21
<표 2-9> 사이버 괴롭힘 예시	22
<표 3-1> 조치의무사업자 현황(2022년 6월 기준)	30
<표 3-2> 2022년도 신규 추가 조치의무사업자 현황	31
<표 3-3> 2022년도에 조치의무 제외 사업자 현황	31
<표 3-4> 조치의무사업자 의견조사 응답 현황	32
<표 3-5> 조치항목별 시행상의 어려움 현황과 정도	33
<표 3-6>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성과평가 지표	34
<표 3-7> 신고기능 마련 및 처리 관련 의견 조사 결과	36
<표 3-8> 신고기능 마련 및 처리 관련 우려사항 조사 결과	37
<표 3-9> 검색제한 조치 관련 의견 조사 결과	38
<표 3-10> 검색제한 조치 관련 우려사항 조사 결과	38
<표 3-11>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연도별 피해 신고 처리 건수	40
<표 3-12> 필터링 및 게재제한 관련 의견 조사 결과	41
<표 3-13> 필터링 및 게재제한 관련 우려사항 조사 결과	41
<표 3-14> 사전경고 및 로그기록 보관 관련 의견 조사 결과	42
<표 3-15> 사전경고 및 로그기록 보관 관련 우려사항 조사 결과	43
<표 3-1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관련 의견 조사 결과	44

<표 3-17>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관련 우려사항 조사 결과	44
<표 4-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법률근거, 역할 및 대상	58
<표 4-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률 근거, 역할 및 대상	59
<표 4-3>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업무대행 체계	59
<표 4-4> 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 개정안	60
<표 4-5> 면책유형과 요건충족 여부 검토안	66
<표 4-6> 사업법 제32조제1항의 이용자 보호요건 및 조치의무사업자의 요건 충족 여부 ..	67
<표 4-7> 면책규정 마련을 위한 법 제22조의5 개정방안	69
<표 4-8>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71
<표 4-9> 불법촬영물 영상의 방심위 전달 후 삭제를 위한 고시 개정안	71
<표 4-10> 재난 주관 방송사 지원사업 현황	75
<표 4-11> 조치의무 이행 지원의 법률적 근거 강화를 위한 사업법 제22조의5 개정안	78
<표 4-12> 중소기업 한정지원을 위한 사업법 제22조의5 및 시행령 제30조의6 개정안	78
<표 4-13> 개인정보보호법 상 안전조치의무 관련 기술지원센터 운영 현황	83
<표 4-14> 지침 및 안내자료 제공현황 비교	84

그 립 목 차

[그림 3-1] 호주의 온라인안전감독관의 ‘온라인 안전 가이드’	49
[그림 4-1] 조치의무사업자 조치의무 이행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	74

요 약 문

1. 제 목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조치 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세계 최초로 도입된 기술적 조치 제도의 도입효과를 평가하여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제도운영 상의 애로사항 및 민원 등을 파악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 관련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유사 입법사례 조사를 통해 현행 법령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분석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 관련 시행효과 분석 및 사전조치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제도적 미비점 도출 및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구성 및 범위에 관해 기술한다.

제2장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및 사례조사를 검토한다. 여기서는 현재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 등과 유사한 「저작권법」의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해외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입법례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제3장은 기술적 조치 운영 현황 및 개선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국내외 환경

및 동향을 살펴보고, 기술적 조치 도입 현황 및 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출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개선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제4장은 디지털성범죄물 등 유통방지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관련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 동향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2장과 제3장, 4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향후 디지털성범죄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실제 필드에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치의무사업자들의 제도개선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이행현황 및 조치의무사업자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원활한 제도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을 도출했다.

제2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적 조치 및 관리적 조치를 부과하는 국내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안」,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 등 해외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관련 입법례를 분석했다. 입법례 분석결과,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글로벌 사업자를 국내법으로 포섭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적인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불법촬영물 등의 경우 국내의 지정 신고·삭제 요청기관과 같이 권리자를 대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는 경향성도 발견했다. 다만, 유럽의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유럽연합과 회원국에 미치는 구조적인 위해성(危害性)을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결과를 독립적인 감시기관에서 감사(제28(3)조)함으로써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은 국내와 차이가 있다. 국내의 경우는 조치의무사업자로부터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고 있으나,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의 안전성과 계획을 통한 개선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의 투명성 책무를 단순히 보고서 제출 및 현장실사로 같

음하기보다는, 유럽 및 영국의 사례와 같이 서비스의 구조적인 위해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감사를 받도록 절차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제3장은 조치의무 유형별로 기술적·관리적 조치 운영 현황 및 조치의무사업자의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여기서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 내용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치의무사업자들은 신고삭제조치, 필터링 조치, 사전경고 조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이행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됐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조치의무사업자가 피해자 및 기관단체의 신고에 따라 삭제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모두 27,58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트위터, 구글, 핀터레스트와 같이 국내에서 이용량이 많은 글로벌 플랫폼을 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되어 글로벌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제출된 투명성 보고서가 2021년도까지의 이행상황만이 담겨 있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2년도의 이행현황은 2023년도 상반기에 확인이 필요하다.

조치의무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조치항목별 시행상의 어려움의 정도는 필터링 기술 적용 및 게재제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평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의무이행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신고 접수된 영상물의 처리 및 민원대응 지원, 유해단어 기준 마련에 대한 지원, 필터링 조치에 관한 기술지원 확대, 조치의무 이행으로 인한 비용부담 지원 및 기타 요구사항을 발견했다.

제4장은 디지털성범죄물 등 유통방지 관련 정책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제3장에서 분석된 개선 방향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 확대, 필터링 인정기준 검토, 오검출 관련 면책규정의 기준과 범위 개정, 불법촬영물 영상의 방심위 전달 후 삭제 허용, 조치의무 이행 활동 독려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검토했다.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기관 확대와 관련해서, 전국 각 시·도에서 전남, 강원, 울산, 세종 등 미설치 지역이 존재하여, 전국 권역별로 신고·삭제 요청기관 순차 확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대상기관 확대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촬영물 삭제 업무 역량을 가진 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보조 실적 여부와 상관없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역량심사를 통해서 대상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

안했다.

필터링 인정기준과 관련해서, 일부 사업자들은 시스템의 기술적 상황과 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 서비스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되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게재된 정보를 식별후 삭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해설서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명시한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허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단순히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대한 일부 예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다. 따라서, 시행령이나 고시의 개정 없이도 행정청의 권한에 따라 제도의 도입목적, 기술적 가능성, 사업자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상황을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오검출 관련 면책규정의 기준과 범위 개정에 대해, 현행 법령에서도 법원의 직권에 따라 오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나, 기술적 조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면책이 법률상에 명시될 경우, 조치의무사업자의 책임 한계가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했다면, 조치의무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요건의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경감 혹은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2장에서 검토했던 「저작권법」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면제조건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면책의 범위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상책임으로 한정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불법촬영물 영상의 방심위 전달 후 삭제 허용과 관련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재유통방지를 위해서는 불법촬영물로 인식된 신고·접수 받은 모든 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 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불법촬영물로 인식된 영상을 방심위 전달 후 삭제하는 의무를 법령에 설치하고자 한다면, 현재 고시 제5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조치의무 이행 활동을 독려를 위해, 조치의무 이행 지원 강화 방안, 검색제한 의무 이행 활동 지원 방안, 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조치의무 이행 지원과 관련해서, 법률상의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범자들의 법률 준수 및 의무이행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비용 지원도 제공할 수

있으며,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범정부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일지라고 의무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공은 가능하며, 타 분야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원과 관련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다.

검색제한 의무이행 활동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유해단어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유해단어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 축적을 지원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이슈에 따라 인터넷상의 유해단어를 선정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민간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 시민단체가 불법촬영물 등에 사용되는 검색어 등을 발굴하고, 선정된 검색어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조치의무이행을 위한 기술 가이드 개선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지원을 위한 기술상담, 컨설팅, 현장방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기술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사업자가 아니라도 ‘불법촬영물’이나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체계 운영 확대가 가능해져, 불법촬영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센터를 참조하여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와 관련하여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디지털성범죄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법률 제·개정 시 참고 가능한 정책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6. 기대효과

세계 최초로 도입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도입 효과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계도기간의 운용상 미비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환류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물 등의 유통방지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기술적·관리적 조치 도입 배경) N번방 사건 등으로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및 아동·청소년 착취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통방지 책무를 강제할 필요성이 제기됨
 - 디지털성범죄물은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 등이 인터넷상에서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20년 4~5월)이 이뤄짐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5제1항, 제22조의5제2항 및 제22조의6,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 신설)

- (계도기간 운영) 필터링 기술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식별 및 게재제한조치에 대해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적용됨
 - 2020년 12월 사업법 시행 이후 기술적 관리적 조치 도입 및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었으며, 이후 2021년 12월에 고시제정 및 조치의 무가 시행됨

- 다만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었는데, 계도기간을 도입한 이유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장비 수급 상황을 고려하고, 실제 서비스환경에서의 오류 등을 충분히 검증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계도기간 동안 조치의무사업자들은 실제 서비스환경에서 필터링을 적용하여 운영해왔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기 동안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모니터링과 시행현황을 점검해왔음
 - 제도의 안정성과 합목적성 제고를 위해, 계도기간 동안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면서 경험한 조치의무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필요성)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2022년 6월 9일자로 조치적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발생된 미비점을 검토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점검이 필요함
- 계도기간 동안 기술적 조치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기술적·행정적·관리적 문제들과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운용상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안정적이고 합목적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더불어 매년 새롭게 지정되는 신규 사업자들의 원활한 조치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도출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목적) 본 연구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조치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의 안정적이고 합목적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조치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운영의 애로사항 및 민원 등을 조사함으로써, 기술적 조치 운영상의 미비점을 발굴하고 진단한다는 점에서 현장의견 수렴형 평가연구의 성격을 가짐
 - 또한, 계도기간 동안 발생한 미비점을 바로잡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법

령 개정안을 도출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정책과정에 환류하고자 함

- (연구범위) 본 연구의 내용은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이행현황 및 조치의무사업자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원활한 제도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을 도출함
 - 이를 위해 제2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적 조치 및 관리적 조치를 부과하는 국내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 영국의 「온라인안전법안」, 호주의 「온라인안전법」 등 해외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관련 입법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제3장은 조치의무 유형별로 기술적·관리적 조치 운영 현황 및 조치의무사업자의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개선방향을 검토함
 - 제4장은 디지털성범죄물 등 유통방지 관련 정책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제3장에서 분석된 개선 방향에 따라 사안별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함
 - 본 연구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기관 확대, 필터링 인정기준 검토, 오검출 관련 면책규정의 기준과 범위 개정, 불법촬영물 영상의 방심위 전달 후 삭제 허용, 조치의무 이행 활동 독려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함

제 2장 국내·외 유사 입법례 및 사례조사

제 1절 국내 유사 입법례 분석

- (개요) 현행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와 유사하게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를 부과하는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검토함
 - 「저작권법」의 기술적 조치(시행령 제46조 등)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범위, 필터링 조치의 도입과 적용, 사전경고 조치, 검색제한 조치 면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기술적 조치와 상당히 유사함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제29조)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자에게 보안조치의 성능을 입증하는 인증취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기술적 조치와 유사함
 - 이에, 본 절에서는 국내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조치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안전성 확보조치의 사례를 통해 기술적 조치의무대상자의 차이, 삭제 및 접근제한 요청의 권리자 및 절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 등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1. 저작권법 상 기술적 조치 제도

- (개요)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시행령」은 사람들 상호 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저작권법 상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저작권법시행령」 제46조는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 ①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②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③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 불법촬영물의 기술적 조치를 모델로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사실상 비교·식별을 통한 검색제한 조치, 필터링 조치, 사전경고 조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 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저작권법」 제104조)
 - 이때,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의미함
 - 「저작권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보면,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필터링을 시행하고 있음

<표 2-1>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제45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가.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

는 자료

- 나.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 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는 업무를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 (기술적인 조치 등의 요청권자) 저작물에 대해 특징정보를 확인하여 검색제한, 송신제한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권리 대리자로 한정되며, 이 점이 제3의 지정기관이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불법촬영물 등의 관리적 조치와 차이가 있음

-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자료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함(「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
- 이때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란,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된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가, 나목)를 의미함
- 불법촬영물 등에 관한 신고·삭제 요청 제도와 달리 저작물의 경우에는 권리권자와 법정 대리인만 불법 정보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데, 이는 저작물의 침해로 인한 피해는 저작권자의 피해로만 한정되고 저작권자 이외의 자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긴급하게 신고해야 할 상당성이 있

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반면, 저작권물과 달리 불법촬영물의 경우 단 1건의 유포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끼치는 정신적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촬영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영상을 시청하는 인터넷 이용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권리권자 이외에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제102조 제1항 제1호 라목)

-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①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 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질 것, ②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 ③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관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할 것(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을 의미함
- 즉,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지하고 절차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음

<표 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관련 사항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생략>

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 상 기술적 조치 제도

가. 개인정보보호법

-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법 제29조)하고 있음

<표 2-3> 개인정보보호법 상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30조)
-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함(시행령 제48조의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표 2-4> 개인정보보호법 상 안전성 확보조치

구분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지휘·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법에 정한 요건에 포함하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만 해당)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 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려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자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2020)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접근 방지,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특례)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음¹⁾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수탁자), 방송사업자 등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함²⁾

<표 2-5> 기준 적용 대상

기준 적용 대상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음성·데이터 등의 송·수신, 주파수 할당·제공,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기간통신역무 제공 등
				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17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업무제휴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	
			방송사업자(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4)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자 등(IPTV 사업자는 직접 적용)	
	수탁자(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수탁자는 법 제29조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규정을 준용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때 등			

자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2020)

-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법 제39조의 15제1항제5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1호), 3천만

1) 제2020-5호, 2020.12.개정

2)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5조제2항제6호) 부과 가능함

<표 2-6> 과징금 부과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되지만, 특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취득의 의무가 있음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의미(고시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
 -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침해, 해킹사고, 개인정보 침해 등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1년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시작으로 유사한 인증제도를 만들었고, 이것들의 일원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상황
 - 정보보호인증 의무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로 하는 자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임
 -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①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자(상급종합병원, 재학생수가 1만명 이상인 학교),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③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를 의미(동법 시행령 제49조)함
 - 의무대상자는 고시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

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18조제1항제1호)을 받은 경우에도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인증심사 기준)** 인증의 구분에 따라 고시 별표7의 인증기준을 적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고시 별표7의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적용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별표7의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을 적용함
- 과기정통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인증기준 내에서 인증범위, 업무특성,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확인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음

○ **(인증심사 및 보완조치)** 인증심사는 신청인을 방문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함(고시 제25조)

- 서면심사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운영 관련 정책, 지침, 절차 및 이행의 증거자료 검토, 정보보호 대책 및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적용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관리적 요소를 심사함
- 현장심사는 서면심사의 결과와 기술적·물리적 보호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담, 관련 시스템 확인 및 취약점 점검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요소를 심사
-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심사종료 다음 날부터 최대 100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도록 신청인에게 요청

○ **(사후관리)**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정서 유효기간에 연 1회 이상 심사수행기관에 사후심사를 신청해야 함

- 인증 취득한 범위와 관련하여 침해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인증 관련 항목의 보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①거짓 혹은 부정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②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인증을 취득한 자가 사후심사 또는 갱신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요청된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④인증받은 내용을 홍보하면서 인증범위 및 유효기간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누락한 경우, ⑤인증을 취득한 자가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⑥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 사유가 중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견될 때에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고시 제35조)

- (의무이행의 지원)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 시행 의무가 부과되는 대신에, 의무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와 관련한 기술지원과 상담, 인증취득 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³⁾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와 관련하여 법·제도 일반상담과 컨설팅, 현장방문 등을 지원하는 기술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불법촬영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다름
 - 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비용 지원도 이뤄지고 있는데, 과거 인증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과태료를 내겠다는 사업자들이 나타나자(김선애, 2017. 5. 25.), 인증 취득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인증체계를 통합하고 기술지원 및 인증 수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3)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해외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입법례 분석

1. 유럽위원회의 디지털서비스법(DSA)

가. 도입배경

- (현황) 2022년 7월, 유럽의회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불법콘텐츠의 신속한 제거 등 책무를 강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디지털 서비스법)」을 승인
 - 해당 법률이 발효되면, 유럽연합에서 한 개 이상의 회원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플랫폼 제공자들은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신속한 제거 의무'와 '규제당국의 명령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등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광범위한 책무를 부과받게 됨
 - 「디지털서비스법」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기반 중개서비스 제공자(이하 중개서비스)⁴⁾를 구속력 있게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배경) 오늘날의 디지털 서비스 판도는 글로벌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중개플랫폼이 주도하는 형세임
 -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한 다양한 온라인서비스들은 인터넷 이용자들 간의 연결성을 확대하고 국경을 초월한 상품거래를 가능하게 함
 - 다만, 한편으로는 국가의 관할권을 벗어나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정보와 불법상품을 유포 및 확산하는 현상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중개서비스에게 유럽연합 시민과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구성할 책임을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내용) 「디지털서비스법」 서문은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평등 및 법치주의 존중 등

4) 단순도판, 캐싱, 호스팅서비스, 온라인플랫폼서비스, 검색엔진 등을 통칭함

의 가치를 온라인 환경에서도 적용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는 목표를 밝힘

- 그동안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한 해외 온라인 사업자들이 유럽연합 또는 개별 회원국에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음
- 이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규제되는 정보와 상품들이 온라인에서는 규제받지 않는 모순이 발생
- 따라서, 유럽 공통의 규제원칙 수립을 위해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소셜미디어와 중개플랫폼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콘텐츠, 온라인 허위 정보, 기타 사회적 위험을 규율하기 위한 공통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유럽 전역의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고자 함

나. 규제대상의 범위 및 책임비례주의

- (수범자 범위) 「디지털서비스법」은 '실질적 연결'과 '공중배포' 개념을 도입해 수범자의 범위를 규정함
 -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플랫폼 서비스가 유럽연합의 서비스 수신자에게 '실질적인 연결'을 제공한다면, 서비스 제공자의 거주지나 법인의 설립지에 관계없이 「디지털서비스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
 - 따라서,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역외 주장은 유효하지 않게 되며, 글로벌 사업자까지 포섭됨
- (불법정보에 대한 조치의무) 단순한 도관(mere conduit)이 아닌 경우로서, '공중배포'가 가능한 온라인플랫폼 제공자에게 부과됨
 -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플랫폼을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저장하고 공중에게 배포하는 서비스로서 정의함
 - 즉, 단순히 특정 웹사이트를 위한 호스팅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 주요한 목적이 정보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온라인플랫폼으로 해석하지 않음
 - '공중배포'는 서비스가 잠재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서비스 수신자가 추가조치 없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사적인 텍스트 메시징 서비스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음

다.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책무

-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유형) 「디지털서비스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중개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플랫폼, 초대형 온라인플랫폼과 검색엔진 등 4가지로 구분
 - 여기서 중개서비스가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고,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플랫폼, 초대형 온라인플랫폼과 검색엔진 순으로 규정되는 범위가 한정됨

- (서비스 유형에 따른 의무) 「디지털서비스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유형에 따라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조성을 위해 부담해야 할 책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차등 규제를 적용함
 - 모든 중개서비스제공자는 투명성 보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이용약관 마련 의무, 연락처 마련, 법정대리인 지정 등 일반적인 책무(제3장 제1절)가 있음
 -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호스팅 서비스는 불법정보 신고·접수 및 조치의무(제3장 제2절) 의무가 추가로 부과됨
 - 온라인플랫폼은 중개서비스제공자와 호스팅 서비스에 부과된 책무에 더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 책무(제3장 제3절)가 추가로 부과됨
 - 초대형 온라인플랫폼과 검색엔진은 그 규모를 고려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 책무 및 규제당국 협력 의무(제3장 제4절)가 부과됨

<표 2-7>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유형과 적용사업자 현황

의무의 유형	적용사업자			
불법정보 관리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개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호스팅 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라인플랫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플랫폼
규제당국(회원국 당국, EC, EU이사회)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마련 의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개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호스팅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라인플랫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플랫폼

이용약관 제공 의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개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라인플랫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호스팅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플랫폼
고객 연락처 마련 및 법정대리인 지정 의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개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라인플랫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호스팅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플랫폼
불법정보 신고 접수 및 조치 의무	<input type="checkbox"/> 중개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라인플랫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호스팅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플랫폼
불법정보 처리에 관한 불만 대응 및 보상 메커니즘 마련 의무	<input type="checkbox"/> 중개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라인플랫폼	<input type="checkbox"/> 호스팅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플랫폼
적극적인 리스크 평가 및 공공책임 의무	<input type="checkbox"/> 중개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온라인플랫폼	<input type="checkbox"/> 호스팅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플랫폼
맞춤형 광고 및 추천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의무	<input type="checkbox"/> 중개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온라인플랫폼	<input type="checkbox"/> 호스팅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플랫폼
공공안전 및 공중보건 등 비상상황에 대한 규제당국 협조 의무, 정보제공 의무	<input type="checkbox"/> 중개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온라인플랫폼	<input type="checkbox"/> 호스팅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플랫폼

출처: 천혜선 (2022). 유럽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방송통신심의동향>, 24호, 86-95.

- **(불법정보 신고기능)**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정보 신고·삭제 절차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trusted flagger)’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디지털서비스법」 제22조제2항은 ‘불법콘텐츠 감지, 식별 및 통지를 목적으로 특별한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온라인플랫폼 제공자로부터 독립적이며, 부지런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으로 통지를 제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 지정 신청단체의 지위를 얻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때, 지정 신고단체가 상기에 언급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어 각국의 행정당국에 신청하면, 각국의 행정당국이 자격과 역량을 판단하여 지정하게 됨
 - 온라인플랫폼은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로부터 접수된 내용에 대해 지체없이 삭제할 의무가 있고 불법정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한 기록을 보존할 의무(제19조)가 있어, 국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조치와 매우 유사함
- **(비례원칙 적용)**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플랫폼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 비례원칙을 적용함
 -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은 다른 플랫폼보다 더 많은 수의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온라인 생태계의 안전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여타의 플랫폼보다 더 큰 책무가 부여됨

- 새로운 법률체계 아래에서, 초대형 온라인플랫폼과 검색엔진 제공자는 그렇지 않은 플랫폼에 비해 불법정보, 불법상품의 유통방지, 맞춤형 광고와 추천알고리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하여야 하며, 규제 당국의 요청 및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받음

○ **(역외(域外)사업자 포섭을 위한 규정)** 「디지털서비스법」 제3장 제1절은 중개서비스 제공자를 유럽 규제 관할에 포섭하기 위해 공동조항을 지정

- 역외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및 개별 회원국 법률에 근거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를 규정함
-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유럽연합 및 개별 회원국 규제당국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연락창구를 지정(제10조)해야 하며, 유럽연합 내에 법정대리인을 지정(제11조)해야 하며,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 투명성 보고의무(제13조)가 있음
- 또한, 연락처 공개(제10a조), 약관 제공(제12조)과 같은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의무적 조항이 공통적으로 적용됨
-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의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약관을 제공해야 하며, 약관은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에 대한 절차, 알고리즘 의사 결정 등 콘텐츠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모든 정책, 절차, 조치, 도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초대형 온라인플랫폼 및 검색엔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의 언어로 이 용자에게 약관을 제공해야 하며,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식의 요약을 제공해야 함
- 초대형 온라인플랫폼 및 검색엔진은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규제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과됨
-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럽연합과 회원국에 미치는 '구조적 위해성(危害性)'을 평가해야 하며, 해당 평가결과를 제3의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받아야 함(제28(3)조)

5)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소비자들의 10%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검색엔진이나 온라인플랫폼을 의미함. 유럽연합 역내의 인구를 4억 5천만명(EuroStat, 2021)으로 가정할 때, 10% 이상은 4,500만 명 이상으로 볼 수 있음

2. 영국의 온라인안전법안(Online Safety Bill)

- (현황) 브렉시트 이전부터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 과의 기준 조화를 위해 준비해 온 법령으로, 온라인상에서의 불법행위 및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하원에서 발의되어 1, 2회독을 마치고 보고 단계에 있음
 - 온라인 사업자에게 사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 의무규정을 부과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영국에서 운영되는 모든 온라인 사업자는 불법 유해 콘텐츠 및 행위가 자사의 플랫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탐지 및 삭제, 그리고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 조치 등의 의무 부과함

- (규제대상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제작 및 공유하는 이용자 간 서비스(user-to-user service), 검색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법안 제3조)
 - 규제대상 콘텐츠는 ‘불법콘텐츠’, ‘유해콘텐츠’가 있는데, ‘불법콘텐츠’는 단어, 표현 등이 범죄에 관한 상당성이 있는 콘텐츠, 테러 콘텐츠, 아동성착취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의미(법안 제53조)하고 ‘유해콘텐츠’는 청소년에게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콘텐츠를 의미(법안 제54조)함

- (이용자간 서비스에서의 서비스제공자 ‘주의의무’) 「온라인안전법안」 은 제3부 제2장에서 서비스제공자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용자 간 서비스의 제공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각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필수의무)
 - 불법콘텐츠 위험 평가 의무(제8조)
 - 불법콘텐츠에 대한 의무(제9조)
 - 명시된 내용 보고에 대한 의무(제16조)
 - 불만 절차에 대한 의무(제17조)
 - 표현 및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의무(제18조 제2,3,4항)
 - 명시된 기록 보관 및 검토에 관한 의무

- 추가적 의무 준수
 - 아동 위험 평가에 대한 의무(제10조)
 - 아동 온라인 안전 보호 의무(제11조)

- o (검색서비스에서의 서비스제공자 '주의의무') 온라인서비스법안은 제3부 제2장에서는 검색서비스에서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에 대한 의무(제22조)
 - 불법 콘텐츠에 대한 의무(제23조)
 - 보고에 대한 의무(제26조)

- o (벌칙조항) 조치의무 미이행시 벌금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조치의무 제도와 유사함
 - 의무 위반 사업자에게는 1천8백만 파운드 혹은 글로벌 매출의 10% 중 큰 것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경영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함

- o (행위지침) 「온라인안전법안」은 구체적인 행위지침까지 명시한 국내법과 달리 의무규정이 모호하여 실효성 및 관리감독의 임의성과 관련한 우려가 있음
 - 현재 입법 준비 중인 단계로 관련 규칙이나 고시 등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온라인 사업자에 관한 의무규정이 당위적·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온라인안전법안」 제 9조(불법 콘텐츠에 대한 안전 의무)는 '개인에 대한 피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용할 의무', '다음을 위해 설계된 비례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의무',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우선 순위의 불법 콘텐츠를 접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의무', '우선순위 불법 콘텐츠가 존재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의무', '제공자가 불법 콘텐츠의 존재에 대해 경고를 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할 의무'를 나열함
 - 이때, 불법콘텐츠를 최대한 빨리 삭제 및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행위지침 이외에

는 '적절한 조치', '비례시스템 및 프로세스 사용' 등의 다소 모호한 행위지침만 명시된 상황으로,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행정벌 조항이 있는 데 반해 수범자의 행위지침은 모호한 상황임

- Ofcom(영국 커뮤니케이션청, Office of Communication)은 의무조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4가지 원칙 및 7가지 점검표를 제시했으나, 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지침이 제시되지 않음

<표 2-8> 영국 온라인 안전법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칙과 체크리스트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4가지 원칙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7가지 체크 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의 소유 혹은 관리자는 플랫폼의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 예방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위험 노출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뿐만 아니라 노인과 저학력층 등 리터러시 역량이 낮은 집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한 이용에 도움이 되는 기능, 옵션, 도구 등을 선택할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플랫폼이 위협과 유해에 대처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는지 확인해라 - 아동 청소년 등 취약한 이용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 이용자의 불만 및 신고가 적절히 처리되는 확인해라 - 각 기업이 채택한 안전 조치의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해야 한다. - 온라인 안전 설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라 - 서비스의 안전을 책임질 적절한 사람을 임명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 온라인 안전 설계에 대한 직원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확인해라

- 이처럼, 조치의무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이행 여부 판단 등의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규제 당국에 의한 임의적 해석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BBC, 2021. 6. 23.)

3.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

가. 도입목적과 내용

- (현황) 기존의 온라인 안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2021년 7월 23일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을 제정함
 - 「온라인안전법」은 ‘아동대상 사이버괴롭힘 콘텐츠’와 함께 ‘성인 대상 사이버괴롭힘 콘텐츠’를 모두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에 있는 신고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콘텐츠를 삭제 조치 할 수 있도록 함
 - ‘사이버 괴롭힘’이란, 누군가가 인터넷을 사용하여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비열하게 행동하여 기분이 나쁘거나 속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소셜 미디어 사이트, 게임, 앱, 기타 온라인 또는 전자 서비스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사이버 괴롭힘’의 형식으로는 게시물, 댓글, 텍스트, 메시지, 채팅, 라이브 스트리밍, 밈, 이미지, 비디오 및 이메일이 포함될 수 있음

<표 2-9> 사이버 괴롭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는 메시지를 보냄· 부끄러운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 당사자에 대한 불쾌한 온라인 가십을 퍼뜨림· 자신의 이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듦· 당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믿도록 속이는 것
--

자료: 온라인안전국 홈페이지,
(<https://www.esafety.gov.au/key-issues/cyberbullying#what-is-cyberbullying>)

- (내용) 해당 법의 목적은 ①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②호주인을 위한 온라인 안전 환경을 증진하기 위함
 - 온라인안전국의 기능은 ①호주인을 위한 온라인 안전증진, ②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불만제기시스템 관리, ③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불만제기시스템 관리, ④동의 없는 사적인 이미지의 공유에 대한 불만 및 이의제기시스템 관리, ⑤온라인 콘텐츠 구성표 관리, ⑥호주인의 온라인

- 안전과 관련된 연방 부서, 당국 및 기관의 활동 조정을 규정 등이 포함됨
- 규제대상 콘텐츠는 ‘아동 대상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와 ‘성인 대상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로 구분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등도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에 포함됨
- 「온라인안전법」 온라인안전국 신고시스템에 관한 이의제기, 신고, 삭제고지 등의 절차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나. 신고·삭제 체계

- (신고·삭제 대상 콘텐츠 유형) 아동 대상과 성인 대상의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가 신고 및 삭제 대상 콘텐츠로 규정되며, 동의없는 불법촬영물과 허위조작영상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유형의 콘텐츠를 포함함
 - ‘아동 대상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는 ①소셜미디어 서비스, 관련 전자 서비스, 지정된 인터넷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로서, ②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 판단하기에, ③해당 콘텐츠가 호주 특정 어린이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의도되었거나, 호주 아동에게 심각하게 위협 및 협박, 희롱, 굴욕감을 주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성인 대상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는 ①소셜미디어 서비스, 관련 전자 서비스, 지정된 인터넷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로서, ②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 판단하기에 해당 콘텐츠가 호주 특정 성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고, ③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 판단하기에 모든 상황에서 콘텐츠를 위협적이거나 희롱,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의미함
- (불만제기시스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불만 제기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소셜미디어 서비스, 관련 전자 서비스 또는 지정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를 서비스에서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제거통지)를 받을 수 있음

-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자료 호스팅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삭제통지)를 받을 수 있음
 -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은 해당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 게시를 자제하거나 콘텐츠 게시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최종 사용자 고지)를 받을 수 있음
- **(신고권자)**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의 대상 또는 대상이라고 믿는 이유가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제30조)할 수 있음
- '아동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에 대해서는 본인, 부모, 보호자, 또는 아동이 해당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성인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에 대해서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음
 - 호주에서는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에 대해 권리자(본인, 부모·보호자, 권한 부여자)만 신고할 수 있는데, 제3의 신고자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아 불법촬영물 유포 등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48시간 이내의 삭제)** 아동·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는 삭제요청 후 48시간 이내 삭제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안전국에 신고할 수 있음
-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삭제요청 후 48시간 이내 삭제되지 않을 때 온라인안전국에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안전국은 신고를 조사한 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36조)
 -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유포된 콘텐츠는 복제 및 유통 속도가 매우 빨라서 48시간의 유예는 이미 사후 대응으로서는 신속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비해서 불법정보에 대한 조치가 느리다고 볼 수 있음
- **(온라인안전국의 판단에 따른 서비스제공자에 따른 삭제고지)** 온라인안전국은 신고된 콘텐츠가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라고 판단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고지를 서

면으로 통지할 수 있음

- 서비스제공자는 삭제 고지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또는 온라인안전국이 허용하는 더 긴 기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구받음
- 삭제 고지를 받은 서비스제공자는 삭제통지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민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 (불법정보 신고기능) 유럽 「디지털서비스법」은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로부터 접수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삭제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내 불법촬영물 등에 관한 신고·삭제 조치와 유사함
 - 저작권 위반물과 달리, 불법촬영물을 비롯한 온라인상의 다양한 불법정보들이 정보 삭제를 요구할 명확한 권리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불법정보의 신고와 삭제가 원활하지 않았음
 - 또한 불법정보의 신고·삭제를 상당 부분 민간기구와 일부 플랫폼 사업자 간의 자율적 협력에만 의존했고, 그로 인해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
 - 이에 유럽에서도 온라인상의 불법 정보를 검색·식별하여 온라인플랫폼에게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을 법률로써 지정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법률적 지위도 불법정보 유통방지 제도에서는 타당한 조치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유럽 「디지털서비스법」은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의 자격요건을 ‘결격사유가 없는,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지정의 권한은 각국의 규제기관에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가 역량심사를 통해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한 점이 차이가 있음
 - 국내는 신고·삭제 요청기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없는 지역이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처럼 유럽 사례를 참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를 대상으로 주무부처의 재량에 따라 역량심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비례적 조치 부과)** 유럽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사업자, 검색엔진 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의 차이를 두어 비례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는 투명성 보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이용약관 마련 의무, 연락처 마련 및 법적 대리인 지정 등 일반적 책무와 불법정보 신고접수 및 조치의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 책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함
 - 초대형 온라인플랫폼과 검색엔진에게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이용약관 마련 의무, 연락처 마련 및 법정 대리인 지정 등의 일반적 책무 이외에도 불법정보 신고·접수 및 조치의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 책무,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 책무 및 규제당국 협력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함

- **(위해성 평가와 독립적인 감사)** 유럽연합과 영국은 초대형 온라인플랫폼과 검색엔진에게 서비스의 구조적인 위해성(危害性)을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결과를 독립적인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제28(3)조)를 받아 위해성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여기서 위해성이란, 불법콘텐츠 유포, 공공안전과 선거에 대한 영향, 기본권 침해,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 및 공중보건, 미성년자 및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의미함
 - 초대형 온라인플랫폼과 검색엔진은 정기적으로 구조적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독립적인 제3의 감사기관이 인정한 위험 완화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데, 만약 위험완화 조치를 미이행할 시 과징금 대상이 됨
 - 마지막으로, 위해성 평가 결과 및 완화 조치, 감사보고서, 감사이행보고서 등을 각각의 회원국 규제담당자(디지털서비스조정관, digital service coordinator)과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우리나라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투명성 보고서를 조치

의무사업자로부터 제출받고 있으나, 위해성 평가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유럽 및 영국의 사례와 같이 서비스의 구조적인 위해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감사를 받도록 절차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제3의 독립적인 기관(민간 기업이나 단체)의 위해성 평가결과 및 계획에 대한 감사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무 이행에 있어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국외사업자 포섭)**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사업자까지도 의무 수행 대상으로 포섭하여 규율하는 것이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음

-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적 및 서버의 위치와 상관없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과 영국의 「온라인안전법안」은 온라인 서비스가 유럽 연합 자국 내의 수신자에게 ‘실질적인 연결’을 제공한다면,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 법인의 위치 등과 관계없이 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
- 즉, 글로벌 사업자들은 자국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되고 있어, 서버나 법인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역의 주장은 유효성을 잃게 됨

○ **(강력한 벌칙조항 마련)** 「디지털서비스법」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럽집행위원회와 디지털서비스조정관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위반 시, 서비스 사업자의 전세계 매출의 6%에 이르는 강력한 벌칙이 적용되고 있음

- 유럽집행위원회는 초대형 온라인플랫폼과 검색엔진에게 임시조치 명령 미준수(제55조), 구속력 있는 약속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제56조) 등에 대해 전년도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유럽집행위원회가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대해 부정확·불완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제52조), 검색알고리즘이나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접근 및 관련 설명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총 연간소득 또는 전년도 전세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

- 이처럼,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유럽연합 또는 개별 회원국의 매출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세계 매출로 규정한 것은 매우 강력한 조항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우리 「전기통신사업법」도 과징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에 비해 과징금 규모는 작은 편임
- 이와 함께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에 대해 일종의 기금 부과 조항이 마련했는데, 기업의 전년도 글로벌 영업이익의 0.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 납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예방조치) 영국 「온라인안전법안」이나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불법 및 유해콘텐츠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

- 특히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정보를 포함해서 유해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제16조), 위해성 평가(제8조),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여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노력 의무(제9조) 등의 사전적인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영국의 「온라인안전법안」은 이용자 간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에서의 서비스제공자에게 필수 및 추가적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 다만, 영국의 「온라인안전법안」은 아직 시행되기 전 법안의 형태이기 때문에 향후 수정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나 해당 법안의 목표가 통신, 즉 온라인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디지털서비스법」과의 기준조화를 유지하는 한, 영국의 「온라인안전법안」과 유사한 형태의 법률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함

○ (삭제 대상 콘텐츠 범위 차이)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광범위

- 한 형태의 불법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호주의 경우는 ‘사이버 괴롭힘’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콘텐츠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은 삭제대상 콘텐츠를 불법촬영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호주 온라인안전법은 규제 콘텐츠를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로 정의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함
 - 국내의 불법촬영물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⁶⁾,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⁷⁾,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의미함
 - 반면, 호주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는 당사자(아동, 성인)에게 “영향”을 끼칠려는 의도를 가지고, “위협·협박, 괴롭히거나 굴욕감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콘텐츠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그 대상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볼 수 있음
 - 즉, 국내는 규제대상 콘텐츠가 디지털 성범죄물로 한정적이라면, 호주는 온라인상 위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함

6)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7)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3장 기술적 조치 운영 현황 및 개선 요구사항 분석

제1절 기술적 조치 도입 현황 및 평가

1. 조치의무사업자 지정 및 필터링 적용 현황

- (지정현황) 2022년 기준으로 모두 88개사(110개 사이트)가 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되었는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트위터 등 주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됨
- 32개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와 56개의 부가통신사업자(해외사업자 8개사 포함)가 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되었으며, 이중 64개사가 기술적 필터링 대상 사업자로 지정됨

<표 3-1> 조치의무사업자 현황(2022년 6월 기준)

구분	기존		신규		합계	
기존	32	(36%)	45	(51%)	77	(88%)
신규	0	(0%)	11	(13%)	11	(13%)
합계	32	(36%)	56	(64%)	88	(100%)

- 구글(구글, 유튜브),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트위치TV, 트위터, 틱톡, 위챗, 마이크로소프트(빙) 등 총 8개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조치의무사업자로 포함되어,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자들도 국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행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하게 됨
- 지정된 88개 사업자 중 2021년도에 지정된 사업자는 77개이며, 2022년도에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에 따라 신규 지정된 사업자는 총 11개로 모두 부가통신사업자임
-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로 추가 지정된 신규 사업자는 총 7개사로, 애드엑스, 사이넷, 비씨이노베이션 등 랜덤채팅앱, 무프패스트컴퍼니, 글로벌몬스터 등 인터넷 방송, 디어유, 스마트나우 등 커뮤니티 서비스임

-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 추가 지정된 사업자는 총 4개사로, 무빈텍, 동아닷컴, 씨엘커뮤니케이션즈, 케이에이유지이며 모두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임

<표 3-2> 2022년도 신규 추가 조치의무사업자 현황

구분	서비스 유형	업체명	서비스명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총 7개사)	랜덤채팅앱	에드엑스	1km
		사이넷	하이데어
		비씨이노베이션	뷰켓
	인터넷방송	무브페스트 컴퍼니	하쿠나라이브
		글로벌몬스터	스타티비
	커뮤니티	디어유	리슨
스마트나우		헝그리앱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총 4개사)	커뮤니티	무빈텍	에캠코리아
		동아닷컴	MLB Park
		씨엘커뮤니케이션즈	클리앙
		케이에이유지	에브리타임

- (기술적 필터링 적용현황) 정부기술을 도입하거나 자체기술 및 상용기술을 사용하여 성능평가를 통과함
 - 필터링 대상 사업자는 66개사이며, 이중 정부제공기술 사용사업자는 21개사, 민간기술사용사업자는 45개사임(2022년 6월 기준)
 - 2022년에 신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 디어유(리슨) 케이에이유지(에브리타임), 에드엑스(1km), 비씨이노베이션(뷰켓) 등 4개 사업자는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부재하여, 기술적 조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 2021년도에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되었으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감소 또는 동영상 게재 기능 삭제 등으로 인해 필터링 의무에서 제외된 경우는 총 8개 사업자임

<표 3-3> 2022년도에 조치의무 제외 사업자 현황

업체명	서비스명	서비스 유형	제외 사유
씨나인	오늘의유머	커뮤니티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하
하이퍼커넥트	아자르	랜덤채팅	게시판 등 커뮤니티 없음

선한미디어	봉TV	인터넷방송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
갯피플	갯피플	커뮤니티	종교사이트, 동영상 게재 불가
아이템아이	아이템아이	아이템거래	재화의 판매
아이템베이	아이템베이	아이템거래	재화의 판매
조아라	조아라	웹소설	재화의 판매
문피아	문피아	웹소설	재화의 판매

2. 조치의무 이행 현황과 애로사항 평가

가. 평가 방법

- (조사설계) 조치의무사업자의 사전 의견청취를 통해 수집된 애로사항·요구사항을 토대로 구조화된 설문을 시행하고, 정량조사 보완을 위해 자유서술식으로 의견 수렴을 병행하여 조사를 함
 - 2022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조치의무사업자를 포함하여 총 92개의 조치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39개 사업자가 회신을 완료함

<표 3-4> 조치의무사업자 의견조사 응답 현황

구분	부가통신사업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합계
회신	28	11	39
무응답	28	24	52
합계	56	35	91

- 조치의무 이행현황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조치의무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조치 도입과 의무이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함
- (애로사항 평가) 총 6개 항목의 조치항목 중 '필터링 기술 및 게재제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시행상의 어려움 정도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응답함

<표 3-5> 조치항목별 시행상의 어려움 현황과 정도

구분	어려움 없음	어려움 있음					
		계	거의 없음	약간 없음	보통	약간 있음	매우 있음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68%	32%	3%	3%	18%	8%	0%
2. 신고기능 마련 및 처리	68%	32%	3%	3%	24%	0%	3%
3. 검색제한조치	62%	38%	3%	11%	14%	11%	0%
4. 필터링기술 적용 및 게재제한 조치	45%	55%	0%	5%	11%	13%	26%
5. 사전경고조치	71%	29%	3%	11%	13%	3%	0%
6. 로그기록 보관	66%	34%	0%	5%	21%	5%	3%

○ (조치의무 이행 현황 평가) 본 연구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기준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이행 성과를 평가함

- 다른 유형의 정책과 달리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그 효과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불법행위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렵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경우 그것이 예방조치가 무용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방조치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여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인지를 직접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임
- 이런 이유로 사이버 안전이나 범죄 예방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존 연구들은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규제 이행의 정도나 일반인들의 체감안전도(장윤식 외, 2020) 또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도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조치의무사업자의 의무이행 정도에 대한 정량평가와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건수 대비 불법촬영물의 유포에 대한 신고 비중(%) 감소 등의 간접적인 지표로 확인할 것으로 제언함
- 조치의무 도입이행 성과는 신고기능 마련율, 불법 촬영물 삭제 건수, 필터링 도입률과 필터링 성능평가 통과 점수, 사전경고 조치 도입률, 대응계획 수립 여부 등의 정량적 지표로 평가할 수 있음
- 이외에도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유형별 비율 중 불법촬영물 유포의 비중(%)의

증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통 감소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표 3-6>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성과평가 지표

대분류	소분류	지표	비고
의무이행의 정도	신고삭제조치	신고기능 마련율(%)	정량
		불법촬영물 삭제 건수	정량
	필터링 조치	검색제한 조치 도입률(%)	정량
		필터링 도입률(%)	정량
		필터링 성능평가 점수(%)	정량
	사전경고 조치	사전경고 조치 도입률(%)	정량
계획 수립	불법촬영물 대응계획 수립	정량	
불법촬영물 감소		디지털성범죄피해상당소의 피해신고 유형 중 불법촬영물 유포 비중의 증감	정량

-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2021년 12월에 도입하여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그 결과, 2022년 12월 현재에 규제이행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2022년 6월까지의 조치의무이행 현황을 보고한 각 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가 유일함
- 따라서 본 연구는 2022년 6월에 발표된 투명성 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치의무사업자의 의무이행 정도를 점검함으로써, 기술적·관리적 조치 도입의 성과를 평가함
- 다만, 2022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77개 사업자로
- 또한, 본 연구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연간보고서로 발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건수대비 '불법촬영물 유포비중의 증감'을 불법촬영물 감소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 지표로 제안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는 2022년 12월 기준이 가장 최신의 자료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도입되기 이전인 2021년도 신고건수 통계치임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도입 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향후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나. 의무별 이행 현황 및 애로사항

- (신고기능 도입 및 삭제 현황) 2021년도 한 해 동안 조치의무사업자가 피해자와 기관·단체의 신고를 접수받아 삭제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모두 27,587건으로 2020년 대비 급증함
 - 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신고기능 배치할 의무가 있음
 - 2022년도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4,935건이었으며 삭제 처리된 영상은 27,587건으로 집계됨
 - 이중, 구글 코리아, 메타, 트위터코리아, 핀터레스트 등 글로벌 사업자가 접수한 신고 건수는 14,004건이었으며 삭제 처리된 영상은 26,752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93.8%, 전체 삭제 건수의 97.0%에 이르는 수준임
 - 트위터, 구글, 핀터레스트와 같이 국내에서 이용량이 많은 글로벌 플랫폼을 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함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및 유통 방지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 (신고·삭제 의무 도입 효과) 불법촬영물 등으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지체없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가 가능해짐
 - 국제 앰네스티의 조사(2022. 12. 8.)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비동의 성적촬영물 삭제를 위해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인 구글에 신고를 접수하고 답변을 받기까지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됨
 - 디지털성범죄 피해 생존자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글의 신고시스템을 이용한 응답자 모두가 삭제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삭제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피해 생존자의 경우에도 신고접수 확인 메일을 1년 후에만 받았다고 응답함(국제 앰네스티, 2022. 12. 8.)
 - 또한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이 불법촬영물 등을 신고할 수 있고 피해 신고서 사진

을 포함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신원 유출을 꺼리는 피해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 따라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도입되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삭제하고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1년 이상 걸리던 조치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됨

○ (신고기능 관련 애로사항 평가) 신고기능 마련 및 처리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조치의 무사업자들은 대체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함

- 신고기능을 적용하거나, 신고접수된 게시물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자가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함
- 반면 이용자의 허위신고 및 허위신고로 인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으며, 허위신고로 인한 민원처리가 힘들다고 응답한 조치의무사업자들은 관련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 및 인력 운영에 부담이 있다고 응답함
- 결과적으로 신고기능 마련 및 처리에 관한 어려움은 허위신고로 인한 민원처리인 것으로 판단됨

<표 3-7> 신고기능 마련 및 처리 관련 의견 조사 결과

구분		어려움 없음	어려움 있음
신고기능 마련 및 처리	불법촬영물 등 신고기능을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79%	21%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의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71%	29%
	신고접수된 게시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및 심의요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55%	45%
	신고처리 전담부서 및 인력 운영 비용부담에 어려움이 있다.	58%	42%
	이용자의 허위신고 및 허위신고로 인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53%	47%

- 신고기능 마련 및 처리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어려움의 수준이 보통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허위신고의 처리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약간 있음(14%)', 전담부서 및 인력 운영에서는 어려움이 '매우 있음(11%)' 응답이 타 항목보다는 높았음

<표 3-8> 신고기능 마련 및 처리 관련 우려사항 조사 결과

구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약간 없음	보통	약간 있음	매우 있음
불법촬영물 등 신고기능을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79%	0%	5%	11%	5%	0%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의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71%	5%	3%	13%	8%	0%
신고접수된 게시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및 심의요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55%	3%	8%	18%	8%	8%
신고처리 전담부서 및 인력 운영 비용부담에 어려움이 있다.	58%	0%	5%	16%	5%	16%
이용자의 허위신고 및 허위신고로 인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53%	6%	8%	8%	14%	11%

- (검색제한 조치 도입현황) 위챗, 라인톡, 여보야, 팍스넷 등 검색기능이 없는 예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조치의무사업자가 검색제한 기능을 도입 완료함
 -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검색어를 검색제한 단어로 설정하고 자동완성이나 연관검색어로 불법촬영물과 관련이 있는 검색어가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
 - 제한되는 검색어는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되며, 일부 사업자들은 특정 검색어를 검색할 경우 팝업이나 검색화면에 경고메시지를 표출하고 있음
- (검색제한 관련 애로사항 평가) 검색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조치의무사업자들은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함
 - 검색제한 관련 유해단어의 기준 및 범위 수립에 대해 약 79%에 이르는 응답자가 어

려움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검색어 DB구축 및 운용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71%가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함

- 검색어 비교·식별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3%, 검색결과 송출제한과 관련한 이용자 민원처리 대응에 관해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1%로 나타남

<표 3-9> 검색제한 조치 관련 의견 조사 결과

구분		어려움 없음	어려움 있음
검색제한 조치	검색제한 관련 유해단어의 기준 및 범위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79%	21%
	검색어DB구축 및 운용에 있어 비용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71%	29%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검색어DB에 저장된 불법정보 관련 검색어를 비교·식별하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67%	33%
	검색결과 송출제한과 관련한 이용자의 민원처리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69%	31%

- 다만, 유해단어 기준 및 범위수립에 있어 매우 또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로 나타나 사업자별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10> 검색제한 조치 관련 우려사항 조사 결과

구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약간 없음	보통	약간 있음	매우 있음
검색제한 관련 유해단어의 기준 및 범위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79%	0%	11%	19%	14%	14%
검색어DB구축 및 운용에 있어 비용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71%	3%	11%	11%	11%	6%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검색어DB에 저장된 불법정보 관련 검색어를 비교·식별하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67%	3%	3%	8%	17%	3%
검색결과 송출제한과 관련한 이용자의 민원처리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69%	3%	3%	14%	6%	6%

- **(필터링 조치 도입현황)** 적용예외사업자를 제외하고, 필터링 조치 의무가 부과된 모든 조치의무사업자들이 정부기술이나 자체기술,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하여 불법촬영물의 비교·식별을 실시하고 있음
 - '22년 12월 현재, 총 43개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성능평가를 통과했으며, 불법촬영물 인식률, 일반영상물 인식률, 일관성 지표에서 각각 평균 96.29%, 99.35%, 99.99%를 달성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 도달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법촬영물 유포 비중 감소)** 필터링 조치 도입으로 인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효과를 직접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연간보고서로 발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으로부터 '불법촬영물 유포비중의 증감률'을 활용하여 불법촬영물 필터링 효과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2. 4.)이 발표한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018~2021년 동안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전체 피해신고 건수 대비 피해 촬영물의 온라인 유포를 신고한 건수의 비중은 감소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체 피해 건수는 2018년 2,289건, 2019년 4,114건, 2020년 6,983건, 2021년 10,353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삭제 및 필터링으로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유포' 사례의 비중은 2018년 33.1%, 2019년 29.5%, 2020년 22.7%, 2021년 20.3%로 감소하고 있음
 - 기술적 조치가 불법촬영이나 유포협박과 같은 성범죄 자체를 방지할 수는 없으나 피해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다른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전체 디지털 성범죄 신고에서 '유포' 신고 건수가 감소할 경우 제도 도입의 효과가 있다고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물론,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외부적 요인으로 '유포' 이외의 타 유형의 디지털성범죄 발생건수가 동반하여 감소할 가능성은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불법행위의 감소를 추정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정량 지표가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유포' 관련 피해신고 건수의 감소를 기술적 조치의 효과를 가늠하는 대리지표로 볼 수 있음

<표 3-11>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연도별 피해 신고 처리 건수

구분	합계	유포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유포 불안	편집/합성	사이버 괴롭힘
2018	2,289 (100.0%)	758 (33.1%)	656 (28.7%)	208 (9.1%)	216 (9.4%)	69 (3.0%)	108 (4.7%)
2019	4,114 (100.0%)	1,213 (29.5%)	1,043 (25.4%)	354 (8.6%)	557 (13.5%)	144 (3.5%)	273 (6.6%)
2020	6,983 (100.0%)	1,586 (22.7%)	2,239 (32.1%)	967 (13.8%)	1,050 (15.0%)	349 (5.0%)	306 (4.4%)
2021	10,353 (100.0%)	2,103 (20.3%)	2,228 (21.5%)	1,939 (18.7%)	2,660 (25.7%)	176 (1.7%)	533 (5.1%)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 4.) p. 36.

* 유포: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 편집/합성: 사진 등이 동의없이 성적 촬영물과 합성된 경우

* 불법촬영: 동의없이 촬영된 경우

* 유포협박: 실제 유포여부를 불문하고 협박이 이뤄진 경우

* 유포불안: 유포에 대한 불안을 호소한 경우

*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행해진 경우

* 기타: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 기타 폭력

** 피해자별 중복집계

- (필터링 및 게재제한 관련 애로사항 평가) 필터링 기술 적용 및 게재제한과 관련하여, 일부사업자들은 필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 부족, 내부역량 부족, 장비수급의 어려움, 재원 마련 등 기술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필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 부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5%, 내부역량 부족은 59%, 장비수급의 어려움은 58%, 재원 마련은 53% 정도로 나타남
 - 반면 기술적 필터링으로 인한 민원 대응이나 유관기관의 지원 및 협력에 대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2> 필터링 및 게재제한 관련 의견 조사 결과

구분		어려움 없음	어려움 있음
필터링 기술 적용 및 게재 제한 조치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외부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35%	65%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내부에 전문적인 지식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41%	59%
	필터링 관련 장비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42%	58%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44%	56%
	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기술적 필터링 도입의 일정을 맞추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47%	53%
	필터링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속도저하 및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50%	50%
	필터링 조치 도입을 위한 기술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53%	47%
	공공DNA DB 지원 포털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있다.	59%	41%
	기술적 필터링을 통해 게재제한이 이뤄진 게시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민원을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61%	39%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시행과 관련한 유관기관의 지원 및 협력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68%	32%

- 외부의 기술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에서 어려움의 정도가 매우 높다(32%)는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필터링 조치로 인한 속도 저하나 서비스 장애에 대한 우려의 경우도 어려움의 정도를 매우 높다(26%)고 평가한 비율이 높음

<표 3-13> 필터링 및 게재제한 관련 우려사항 조사 결과

구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약간 없음	보통	약간 있음	매우 있음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외부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35%	6%	6%	3%	18%	32%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내부에 전문적인 지식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41%	0%	6%	9%	21%	24%
필터링 관련 장비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42%	0%	6%	18%	15%	18%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44%	0%	3%	15%	15%	24%

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기술적 필터링 도입의 일정을 맞추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47%	0%	3%	9%	26%	15%
필터링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속도 저하 및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50%	0%	3%	9%	12%	26%
필터링 조치 도입을 위한 기술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53%	0%	6%	12%	15%	15%
공공 DNA DB 지원 포털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있다.	59%	0%	3%	0%	18%	21%
기술적 필터링을 통해 게재제한이 이뤄진 게시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민원을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61%	0%	9%	21%	0%	9%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시행과 관련한 유관기관의 지원 및 협력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68%	0%	0%	9%	9%	15%

○ (사전경고 및 로그기록 보관 도입 현황) 마이크로소프트의 Bing 검색포털과 같이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사업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조치의무사업자가 사전경고 조치와 로그기록 보관을 이행하고 있음

○ (사전경고 및 로그기록 보관 관련 애로사항 평가) 사전경고와 로그기록 보관과 관련해서는 사전 의견 청취에서도 타 의무조치보다 애로사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타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사전경고 및 로그기록 보관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어려움의 정도는 대체로 보통수준으로 평가함

<표 3-14> 사전경고 및 로그기록 보관 관련 의견 조사 결과

구분	어려움 없음	어려움 있음
사전경고 및 로그기록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다.	80%	20%

<표 3-15> 사전경고 및 로그기록 보관 관련 우려사항 조사 결과

구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약간 없음	보통	약간 있음	매우 있음
사전경고 및 로그기록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다.	80%	0%	0%	14%	3%	3%

- (유통방지 계획 수립 현황)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한 조치의무사업자 모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을 제출했으며, 법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계획 이외에도 사업자 자율적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이 확대됨
 - 트위터,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의 사업자들은 24시간 긴급대응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상시적인 신고·삭제 지원체계가 수립되었으며, 세티즌의 경우 신고접수시 담당자에 실시간 문자 통보가 이뤄지고 게시글이 자동 블라인드 처리되는 등 신속한 대응 시스템이 이뤄짐
 - 아프리카TV, 구글, 트위치TV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AI 등을 활용한 자체적인 기술 개발로 방송 및 영상 내 불법·음란 영상물을 식별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기술대응을 높이고 있음
 - 틱톡, 핀터레스트, 트위터 등 해외사업자들의 국내 이용자를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과 이용약관에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한국어 안내가 포함되었으며, 불법촬영물 관련 안내 페이지에 국내 관할기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됨
 -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청소년 대상 특별 보호조치가 마련된 사례도 있는데, 틱톡의 경우 청소년 이용자에게는 타인의 영상을 활용해 새로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듀엣'이나 '이어찍기' 기능의 사용을 제한했고, 16세 미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조치가 이뤄짐
 -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어, 인터넷 이용 문화 개선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됨
 - 이처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사업자들의 자율적 노력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됨

- (유통방지 계획수립 관련 애로사항)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음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수립에 대한 내부 인력의 역량이 부족하고, 계획 작성과 관련된 사전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표 3-1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관련 의견 조사 결과

구분		어려움 없음	어려움 있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구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42%	58%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구획 수립 및 투명성 보고서 작성에 있어 사전적인 설명 및 지원이 부족하다.	48%	52%

- 투명성 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만한 사전적인 설명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내부역량이 부족하다는 응답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 타 사례를 참조하기 어려웠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행정인력이 많고 관리 경험이 있는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투명성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관련 경험이 누적되고 참고할 수 있는 타 사업자의 사례들이 늘어나면 관련 어려움이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됨

<표 3-17>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관련 우려사항 조사 결과

구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약간 없음	보통	약간 있음	매우 있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구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42%	6%	6%	23%	16%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구획 수립 및 투명성 보고서 작성에 있어 사전적인 설명 및 지원이 부족하다.	48%	0%	0%	26%	16%	10%

제2절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개선 요구사항 분석

- (개요) 이 섹션에서는 조치의무사업자들 대상 의견조사 시 개방형 질문으로 각 조치의 무 이행과 관련한 어려움과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질의하였으며, 제도개선 요구사항과 개선 방향을 정리함

1. 신고 접수된 영상물의 처리 및 민원 대응 지원

- (요구사항) 신고접수된 영상의 불법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불법촬영물과 무관한 신고 및 허위신고 증가로 담당부서 업무부담 과중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불법촬영물과 무관한 신고에 대해 사업자가 반드시 대응할 의무가 없으나, 고객대응 차원에서 무관한 신고 및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여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사업자들 허위 및 무관 신고가 접수되면 제3의 기관에 일괄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함
- (개선방향) 이용자의 신고 및 민원처리는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배포하는 업무참고자료에 신고유형별 담당기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처리 담당자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사업자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촬영물 관련이 아닌 일반 불만이나 신고에 대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적합하지 않음
 - 다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관리적 조치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나 안내서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아닌 기타 온라인 피해 관련 주요 기관 연락처, 예를 들어 신고유형별 담당기관 및 온라인 피해 관련 통합안내센터(예: 온라인 피해 365센터 등) 등에 대한 정보를 별첨자료로 기재함으로써, 민원처리 담당자의 업무를 도와주는 정도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임

2. 유해단어 기준 마련에 대한 지원

- (요구사항) 검색제한 조치이행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자들은 검색제한이 필요한 유해 단어를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색제한이 필요한 유해단어의 명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개선방향)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검색제한이 필요한 유해단어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정부에 의한 검색어 제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검색어 제시는 바람직하지 않음
 - 검색제한이 필요한 유해단어의 선정은 사업자나 자율규제기구, 또는 민간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대규모 사업자와 달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검색단어 선정에 있어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부족할 수 있어, 직접적인 유해단어 제시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활동 지원을 통해 유해단어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 축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민간기구, 시민단체, 관련 학술단체 등이 유해단어를 조사·분류·선정하는 등의 자율규제 활동을 할 경우,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3. 필터링 조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확대

- (요구사항) 공공 DNA DB적용 과정에서 기술적인 호환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DB 업데이트 시 설비대응을 위한 사전 고지, 오검출 문제 해소 및 민원 대응 지원 등의 기술적 지원 확대를 요구함
 - 공공 DNA DB 적용과 필터링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각 사업자별로 자사의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공공 DNA DB 업데이트시 조치의무사업자의 설비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 고지 혹은 공지가 없어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으므로, 대규모 업

데이트 시에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업데이트 과정에서 트래픽 용량 등의 처리 효율화 등의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오검출 처리과정에서 서비스 장애 발생 경험, 오검출 발생으로 인해 사용자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필터링 조치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개선방향)** 공공 DNA DB와 필터링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기술지원 확대, 그리고 오검출과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DNA DB 모듈 업그레이드 방법 및 필터링 시스템 테스트 방법 등, 사업자별로 필터링 기술 적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 요구가 명확하므로, 기술지원 인력 확충 및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원 확대 필요
- 적극 행정의 차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공 DNA DB 업데이트시에 사전에 필터링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용량과 시기에 대한 사전 고지 혹은 공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오검출과 관련한 기술적인 우려는 오검출 문제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와 지속적인 오검출 수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며, 오검출에 대한 사후적인 처리와 관련한 불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오검출 예외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인력 확보 및 피드백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함

4. 조치의무 이행으로 인한 비용 부담 지원

○ **(요구사항)** 필터링 조치와 로그기록 보관 의무 등에 따른 기술도입·서버증설 등의 비용부담이 증가

- 자체적인 필터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는 외부 필터링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데, 필터링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이용가격이 높아 경제적 부담이 있음
- 모든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 발생으로 서버증설의 비용이 부담됨

○ **(개선방향)** 의무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기술 및 장비 관련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검토가 필요함

- 자체적인 필터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는 외부 필터링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나,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시장이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므로 경쟁적인 가격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클 수 있음
- 서버 확충 비용을 보조하거나 기술 및 장비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의무조치 이행에 대해서도 비용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법령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인센티브형 제도가 흔하지는 않지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기술 및 장비 확보 등과 관련하여 비용부담이 큰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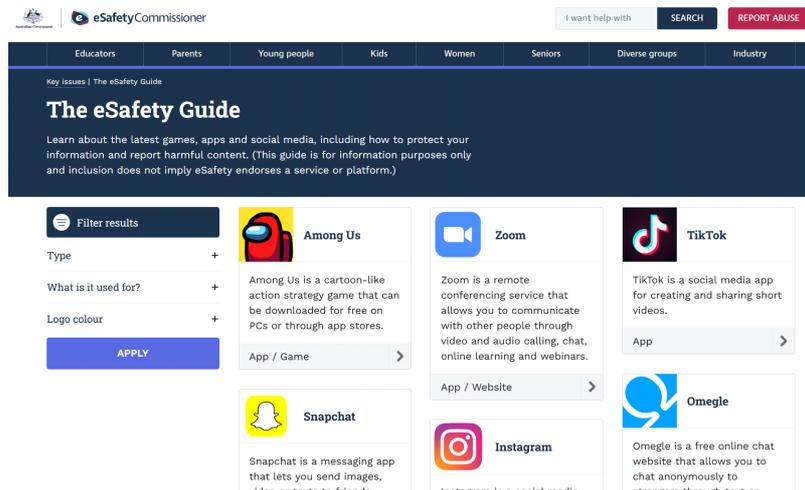
5. 기타 요구사항

- o (인식개선) 불법촬영물 등의 업로드 방지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노출할 경우,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불법촬영물과 연관된 사이트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사전경고 조치의 이행이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으나, 고지용 팝업의 상시 노출로 인해 고객이 불편감을 느끼거나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부적절한 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러한 우려는 사전 경고 조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
 - 따라서, 일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사전경고 조치가 책임감 있는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홍보 지원이 필요함
 - 일례로 호주의 ‘온라인안전감독관’은 자체 홈페이지⁸⁾에서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필요

8) 호주의 온라인안전감독관의 ‘온라인 안전 가이드 (The e-Safety Guide)’, <https://www.esafety.gov.au/key-issues/esafety-guide>

성을 홍보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이용자 보호 업무를 성실히 하는 대형 플랫폼이나 게임앱 등에 대한 서비스 안내, 안전한 이용을 위한 신고방법, 이용약관 등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3-1] 호주의 온라인안전감독관의 ‘온라인 안전 가이드’



- 이러한 조치를 통해 조치의무사업자가 안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이용자들 또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고려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o (유관기관 협력 확대) 조치의무 이행과 관련한 상세한 가이드 및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응하여 현재의 조치기준 해설서 이외의 상세한 안내자료 및 교육자료의 제작·배포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조치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설명자료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주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작성과 관련해서 참고할만한 형식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예시자료가 부족하여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임

- 제도에 대한 이해와 업무숙련도는 제도 도입 이후에 기술적·관리적 조치 경험이 점차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나, 조치의무사업자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위해서 가이드라인, 조치기준 해설서 뿐만 아니라 상세한 안내자료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조치기준 해설서를 보강하고, 조치이행과 관련한 주요 질의사항을 FAQ 형태로 알려주는 안내자료 및 교육자료 등을 제작·배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제 4 장 디지털성범죄물 등 유통방지 관련 정책환경 변화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제1절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관련 정책환경 분석

1.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인식 및 실태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 소위 'N번방 사건' 이후로 우리사회의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특히 불법촬영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우려 수준이 높은 상황임
 - '2030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배혜란, 2022)⁹⁾'에 따르면, 19살부터 39살 사이의 서울시민의 31.9%가 디지털성범죄를 직접적으로 당하거나 디지털성범죄를 목격했다고 응답함
 - 해당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5%가 최근 우리 사회의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특히 여성응답자의 96.5%가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하다고 응답함
 - 설문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응답자중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감 형성 후 성적인 촬영물 요구'(64.3%), '성적 모델감이 느껴지는 신체의 일부 또는 나체가 촬영된 피해(62.3%)'를 경험한 비중이 높았으며, 이외에도 '나의 사진/영상물 유통 협박(54.1%)', /온라인에서 나의 성적인 촬영물이 무단 유통(44.9%)' 등 불법촬영물의 영상물 유통을 경험한 빈도도 높게 나타남

- (디지털성범죄물 시정 및 삭제 요청 증가) 'N번방 사건' 등에 대응한 범부처 협력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삭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음

9) 온라인으로 실시된 실태조사는 19살 이상~39살 이하 서울 시민 1,057명(여성 547명, 남성 5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심의 건수가 총 2만2,104건으로, 2022년 4사분기까지 집계되면 2019년인 2만5,992건, 2020년 3만5,603건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2022년에 심의와 시정요구건수가 증가한 이유를 선제적 긴급 모니터링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되어 시정요구가 증가했다고 밝힘(뉴시스, 2022. 7. 9.)

○ **(디지털성범죄 지속)** 기술적·관리적 조치 도입으로 국내 주요 유통플랫폼에서의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은 감소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협박 등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영상물 등의 유포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디지털성범죄 피의자 총 1천694명을 검거함(강주현, 2022. 11. 5.)
- 피의자의 범행유형별로는 전체 검거 사건(1천612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706건·43.8%)와 불법촬영물 범죄(520건·32.2%), 불법영상물(21%), 허위영상물(3%) 순으로 나타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강주현, 2022. 11. 5.)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따르면 2021년에 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 중 불법촬영 804건, 불법촬영물 유포불안 1,187건, 유포·재유포 641건, 유포협박 429건 등으로 나타남(이지윤, 2022. 11. 30.)

2.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 동향

- **(국정과제 선정)**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이 포함됨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부처간 협업이 강화될 예정임
- 2020년에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이 마련되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지속적인 협업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새정부의 64번 국정과제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법무부, 방통위, 여가부)'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이 포함됨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
 - 협의회는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여, 부처별 협업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있음(방송통신위원회, 2022. 12. 7.)
 - 더불어 2023년 1월 중에 민간 플랫폼 사업자까지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에 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구축에 1.45억 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시스템 구축에 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업무를 강화할 예정임
- **(디지털성범죄 업정 대응 요구)**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회는 정부에 디지털성범죄 업정 대응을 요구함
- 기술적·관리적 조치 도입 이후에도 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플랫폼을 통해서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지속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수사 강화와 더불어 불법영상 삭제와 신변 보호 강화 등 피해자 지원 확대를 주문함(곽재훈, 2022. 9. 2.)
- **(기술대응 확대)** 기술적 조치 도입으로 인해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물을 비교·식별하는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음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속 피해자의 얼굴, 움직임, 오디오 주파수,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영상콘텐츠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비교·식별하는 AI기술 개발을 추진(서울기술연구원, 2022. 7. 8.)

하고 있음

- 경찰청은 2018년도에 웹하드 카르텔이 이슈화되자, '수사'와 '삭제·차단·지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불법촬영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으며, 이후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삭제·차단을 위한 피해 영상물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뉴시스, 2022. 3. 39.)
- 서울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업무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향후 서울기술연구원이 개발한 AI기술을 활용하여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불법촬영물을 추적하여 재유포 차단 및 삭제를 지원할 예정임

제2절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제도개선 방안 검토

1.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확대

- (현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¹⁰⁾에 따라 전국 15개소의 기관이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 요청을 수행하고 있음
 - 2022년 현재는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추천받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지정한 15개소가 신고 및 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이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성폭력피해상담소가 전무하기 때문에, 현행 신고·삭제 요청기관 15개소 모두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상황임

- (확대 필요성 검토) 전국 각 시·도에서 전남, 강원, 울산, 세종 등 미설치 지역이 존재하여, 전국 권역별로 신고·삭제 요청기관 순차 확대 필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서울 2곳, 부산 2곳,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각 1곳씩 총 15개소로, 강원, 울산, 세종, 전남 지역은 신고 및 삭제요청 전담기관 부재함
 - 전국 시·도 권역에 공백없는 신고·삭제 요청기관 확보를 위해 법령개정을 통해 대상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10)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중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삭제 요청의 역량을 확보한 단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현행 제30조의5제1항제3호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대한 비용보조를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데,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의 역량이 반드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비용보조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전제로 할 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량심사에 중점을 둔 개정이 필요함
- 따라서 제30조의5제1항제3호 개정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역량심사를 통해서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여지 마련이 필요함

o **(유사사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정보 신고삭제 절차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trusted flagger, 이하 지정 신고단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지정 신고단체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온라인상의 불법정보를 검색·식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게 삭제를 신청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기관과 매우 유사함
- 「디지털서비스법」의 제22조제2항은 불법콘텐츠를 감지, 식별 및 통지할 목적으로 특별한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온라인플랫폼 제공자로부터 독립적이며, 부지런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으로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 신고단체의 지위를 얻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이때, 지정 신고단체의 지위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에 언급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어 각국의 행정당국에 신청하면, 각국의 행정당국이 자격과 역량을 판단하여 지정하게 됨

o **(대상기관 확대안 검토)** 「성폭력방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자체에 신고하여 설치·운영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청소년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성범죄를 포함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대리하게

나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을 신고·삭제 요청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식별 업무에 대한 역량 확보가 필요함

- 「성폭력방지법」 제10조제2항¹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자체에 신고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163개의 성폭력피해 상담소가 있음
- 현재 사업법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15개소의 신고·요청 기관 중에는 이 조항에 근거한 성폭력피해상담소 중에서 디지털성범죄에 특화된 역무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음
- 다만 모든 성범죄피해상담소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전문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에 특화된 경험이 있지는 않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관리하는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는 총 10개에 불과함
- 현재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맡고 있으며, 진흥원이 관리하는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는 총 10개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들 성폭력피해상담소 이외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과 관련한 역량을 가진 기관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신고·삭제 요청 대상기관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임
- 현재 성폭력피해상담소 이외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23조제2항¹²⁾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건 피해자의 보호

11)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12)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

를 위해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221개 기관이 있음

<표 4-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법률근거, 역할 및 대상

구분	내용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법률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역할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대상	전국 221센터 * 방통위 지정기관이 부재한 강원(10개), 울산(5개), 전남(23개), 세종(1개) 포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13)는 범죄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 및 등록 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4월1일 기준으로 전국에 59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음

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 13)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표 4-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률 근거, 역할 및 대상

구분	내용	
범죄 피해자지 원 센터	법률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역할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등 각종 상담 -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수사기관 및 법정에 범죄피해자와 동행 - 범죄피해자의 병원후송·응급진료 및 치료 - 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금 신청과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구조 신청에 대한 안내 등 법률구조 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대상	전국 59개 기관('22년 4월 기준) * 방통위 지정기관이 부재한 강원(6개), 울산(1개), 전남(4개)포함

- 다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현재 자체적인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고,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이첩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신고·요청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역량 확보가 필요함

<표 4-3>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업무대행 체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통합 접수)	-----> 연계· 대행	검찰청	- 구조금·주거 지원 - 피해자국선변호사
		경찰청	- 신변보호, 위치확인장치, 임시숙소
		대한법률 구조공단	- 법률구조, 민사소송대리
		스마일센터	- 심리치료, 임시주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영상물 삭제 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결과적으로는 민간 성폭력피해상담소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불법촬영물 삭제업무의 역량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신고·삭제 요청기관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움
- o (개선방안)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업무 역량을 가진 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보조 실적 여부와 상관없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역량심사를 통해서 대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
 -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 성폭력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삭제업무 역량 확보가 필수적임
 - 이와는 별도로, 현행 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보조 실적 여부와 상관없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질적인 역량심사, 결격사유 검토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는 여지 마련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와 같이 여성가족부나 지자체 등 타기관의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것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량적으로 결격사유와 역량을 가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별도의 역량심사 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표 4-4> 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u>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u>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u>그 밖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u>

<p>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p>	<p>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역량을 가진 기관·단체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p>
--	--

2. 필터링 인정기준 검토

- (현황)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6¹⁴⁾에 따른 기술적 조치는 비교·식별 후 게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설서에서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6제2항제3호는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으로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비교·식별이 이뤄진 후에 정보가 게재되는 것을 가정함
 - 다만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게재 후 식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현재 해설서는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①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②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③ 현재 정부 제공 필터링 기술이 식별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콘텐츠 형식, 즉, 주소링크나 영상태그를 통한 게재, 스틸 이미지나, 음성 등의 경우, 그리고 ④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과 같은 위법사항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음
 - 또한 계도기간 동안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간 방송이나 기술적으로 사전식별 적용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식별 후 삭제 제한을 허용함

14) 제30조의6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하 생략)

- (사업자 주장) 시스템의 기술적 상황과 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 서비스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되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게재된 정보를 식별후 삭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함
 -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해설서의 ‘불가항력’으로만 해석되지 않도록, 실시간 방송이나 시스템의 과부하 등의 기술적 상황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술적인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게재된 영상을 비교·식별하여 삭제하는 것도 허용함을 명시할 것을 요청함
 - 예를 들어 비실시간의 경우라도, 동영상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플랫폼의 경우에는 많은 분량의 영상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어 사전 필터링 적용이 시스템 부하 등의 기술적 문제와 품질 저하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일부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한국지역에 대해서만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 운용에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함

- (유사사례) 특징정보에 기반한 필터링을 적용하는 「저작권법」의 경우, 기술적 조치 적용에 있어 비교·식별과 게재제한의 시간적 선후를 명시하지 않음
 - 「저작권법」 제104조15)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16)에 따른 기술적 조치는 권리자의

-
- 15)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 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행할 것만을 명시할 뿐, 시간적 선후가 명시되지 않음

- (인정기준 검토) 시행령이나 고시의 개정없이도 행정청의 권한에 따라 제도의 도입목적, 기술적 가능성, 사업자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상황을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해설서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명시한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허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시로 제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현행 법령에 대한 해석의 판단은 일차적인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게 있으며,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게재 후라도 매우 짧은 시간에 즉시 삭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사업자의 원활한 조치의무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게재 허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급효과가 개별적으로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몇 초 또는 몇 분까지는 허용한다는 시간을 명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짧은 시간이라도 조회 수가 많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사후적인 필터링 허용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해석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 결론적으로 시행령이나 고시의 개정 없이도 행정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참작하여 제30조의6제2항제3호의 이행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고시 제7조에 식별되기 전에 게재된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속하게 비교·식별을 시행하고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식별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함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직함

3. 오검출 관련 면책규정의 기준과 범위 개정

- (현황) 비교·식별 기술의 적용과정에서 정상적인 영상물의 게재 제한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행정벌(과징금 혹은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어 사업자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 비교·식별 기술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① 비교·식별 기술 자체의 결함이나 오류로 인해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됨으로써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와 ② 오검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상물의 게재제한으로 인해 이용자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이때,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17)에 따른 과징금 조치는 의도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가 이뤄짐
- 만약 오검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상물이 게재 제한되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이용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처리가 지연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적 조치에 의한 오검출이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대상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함
- 현행 필터링 조치는 해당 영상이 불법영상물로 식별될 경우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에게도 원본 영상이 없으며, 이로 인해 기술적 조치의 결과로 게재 제한이 된 영상물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 영상이 오검출된 영상인지 아닌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조치의무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의처리를 지연할 수 있음
-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제1항(18)에 따른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의 즉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19)에 따른

17)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8)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야 한다.

19)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생략)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법령개정 필요성 검토)** 현행 법령에서도 법원의 직권에 따라 오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기술적 조치 이행과 관련해서 사업자의 책임 한계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음
 - 손해배상은 법원의 직권 사항으로, 법적 의무조치의 성실한 이행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이용자가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법원은 현행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음
 - 이때, 기술적 조치 이행과정에서 오검출로 인해 이용자의 게재요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법원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주요한 관건임
 - 오검출의 문제는 DB상의 문제, 비교·식별 기술의 한계, 화면의 유사성, 업데이트 과정에서의 일시적 오류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사업자가 최선의 노력을 통해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일부 오검출이 발생하여 게재가 제한될 수는 있다고 보면 법원이 불가항력이라고 판단할 가능성 크다고 보임
 - 따라서 반드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별도의 면책조항을 마련하지 않아도, 기술적 조치 이행으로 인해 제33조제2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것으로 예측됨
 - 다만, 기술적 조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면책이 법률상에 명시될 경우 필요적 면제가 적용되어, 조치의무사업자의 책임 한계가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음

- **(면책범위 검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했다면, 조치의무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요건의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경감 혹은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면책조항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과 범위에 대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조항을 의미함
 - 다시 말해, 법률이나 협정을 적용할 때에,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함

<표 4-5> 면책유형과 요건충족 여부 검토안

면책 유형	조치의무사업자의 요건 충족 여부
면제	- 일정 요건이 갖춰지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적용 기준이 명확함
경감	- 요건의 충족 정도에 따라 경감의 정도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 경감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면책의 기준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제1항의 이용자 보호는 행위 요건으로 예방노력과 민원 처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 조치의무사업자가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했다면 이용자 보호 요건의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방노력) 국가기술을 사용하고 성능평가를 통과하였다면 오검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민원처리) 기술적인 비교·식별 조치가 이뤄짐을 공지 혹은 고지 하는 사전경고 처리를 시행했다면,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민원대응) 다만, 시행령 제30조의6은 민원인에게 필터링에 의한 게재제한이 이뤄졌음을 고지하는 의무조항은 부재하여 민원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졌음은 민원 제기 후의 사업자의 행위 노력을 고려해야 함

<표 4-6> 사업법 제32조제1항의 이용자 보호요건 및 조치의무사업자의 요건 충족 여부

사업법 제32조제1항의 이용자 보호 요건	요건 충족 여부
<예방노력>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	<예방노력>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국가기술 사용 및 성능평가 실시
<민원 처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 또는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고지	<민원 처리> 제3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라 사전경고조치 실시

- 따라서 기술적 조치의 이행으로 인해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게재제한이 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처리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경감 혹은 면제 사유를 일부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민원처리의 행위요건을 충족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를 게재하고자 하였으나 필터링으로 인해 게재가 제한된 이용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필터링에 의한 게재 제한임을 민원인에게 개별 고지 또는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o (유사사례)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와 유사한 특징 비교 필터링이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경우나 「정보통신망법」의 삭제·임시조치의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 조건을 충족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음
- 「저작권법」 제102조20)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단순한 전송자로서 자동적·중개

20)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적· 일시적 행위를 수행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 「저작권법」 제103조 제5항²¹⁾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공지, 복제·전송 중단 및 재개 등의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최소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면제함
-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17 U.S.C.)」²²⁾ 제512(C)조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일정 행위조건과 수행기준을 충족한 경우 책임을 일괄 면제하고 있음(허준범, 2019. 9. 7.)
- 이때,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른 일정 행위조건이란, ① 저작권 침해 상황을 인지하게 된 경우 신속히 관련 자료를 삭제 또는 차단하고, ② 저작권 침해행위로부터 재정적 이득을 얻지 않고, ③ 침해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 신속히 침해로 주장되는 자료를 삭제 또는 차단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이 면제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²³⁾는 삭제·임시조치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고지 또는 공지한 경우, 배상책임을 경감 또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 21)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2)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조건부 피난처(safe harbor)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라고 부름(허준범, 2019. 9. 7.)
- 23)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는 면제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6항24)에 경감에 대한 절차·판단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행위요건이 단순하여 삭제·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계재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필요적 면제 규정으로 기능함
- o (개정방안) 현행 사업법에서 면책규정은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며, 면책의 범위를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상책임으로 한정하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행 사업법 제33조(손해배상)는 면책조항인 동시에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나열하는 규정으로, 면책을 목적으로 오검출로 인한 배상책임을 제33조에 포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현행 사업법에서 면책규정은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서만 가능하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와 유사하게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규정인 제22조의5조제7항으로 면책규정을 신설할 수 있음
 - 단, 면책의 범위를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상책임으로 한정하여 인적 개입이 없는 기술적 조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만 감경 또는 면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4-7> 면책규정 마련을 위한 법 제22조의5 개정방안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생략)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생략) ② _____ _____ _____

24)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p>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⑥ (생략)</p> <p>⑦ <신설></p>	<p>③ ~⑥ (생략)</p> <p>⑦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이행으로 인해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손해를 입힌 경우, 조치의무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p>
--	--

- (추가 검토사항) 만약 법령 개정없이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기 위해서는 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요건' 이 충족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① 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조치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게재제한 민원인에 대한 대응 의무를 부여하거나, 또는 ② 필터링으로 인해 게재가 제한된 이용자에게 필터링에 따른 게재제한임을 고지하도록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대효과) 해당 규정의 도입으로 인해 조치의무사업자의 법준수 의지를 향상시켜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법의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현행 규정은 조치의무사업자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이를 수행했을 때의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음
 - 이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대로 의무를 수행한 조치의무사업자의 법준수 의지를 꺾을 수 있고, 향후 적극적인 의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면책규정이 도입된다면, 사업자의 법 준수 의지를 향상시켜 규제목적 달성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 불법촬영물 영상의 방심위 전달 후 삭제 허용

- (현황) 현재는 불법촬영물 등으로 신고·접수 받은 영상 중에서 판단이 어려운 영상만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 등의 재유통방지를 위해서는 불법촬영물로 인식된 신고·접수 받은 모든 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 후 삭제하는 방안이 필요함

-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을 서버에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어, 불법촬영물 등으로 신고·접수 받은 영상은 지체없이 삭제하고, 삭제한 결과만을 기록하고 있음
- 다만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접수 받은 영상물 중 불법성 판단이 어려운 영상만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달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있음

<표 4-8>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5조(신고·삭제 요청의 처리)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전용 창구를 통하여 신속하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그러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불법촬영물로 인식된 신고·접수받은 영상을 삭제하기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하여 불법촬영물 DNA DB에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o (개선방안) 불법촬영물로 인식된 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 후 삭제하는 의무를 법령에 설치하고자 한다면, 현재 고시 제5조 개정이 필요해 보임

- 고시 제5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해당 영상물을 전달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해당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표 4-9> 불법촬영물 영상의 방심위 전달 후 삭제를 위한 고시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신고·삭제 요청의 처리) ① 사전조	제5조(신고·삭제 요청의 처리) ① _____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비용지원의 근거는 부재함

- 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제4항²⁶⁾은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지원만 한정함
- 망법 제44조의4(자율규제)²⁷⁾는 지원대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만 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행동강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시행과 관련한 활동만을 한정하여, 의무조치 이행과 관련한 활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o (사업자들 의견) 조치의무이행에는 신고처리 및 민원대응 관련 인력, 필터링·로그기록 보관 관련 기술운영비와 서버증설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특히 자체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경우 필터링 업체에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자들은 사용료가 높다는 인식이 있음

- 신고처리 및 민원대응 관련한 인력소요 증가, 필터링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의무와 관련해서 기술운영비 및 서버증설 등 비용 부담 증가했다고 주장함
 - i) 신고처리 및 민원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비용
 - ii) 필터링 조치와 로그기록 보관 의무 등에 따른 기술도입·서버증설 비용
 - iii) 필터링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이용 비용
- 의견조사에서도 조사에 응답한 조치의무사업자의 약 42%가 신고처리와 관련한 비용부담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약 56%는 필터링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26)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7)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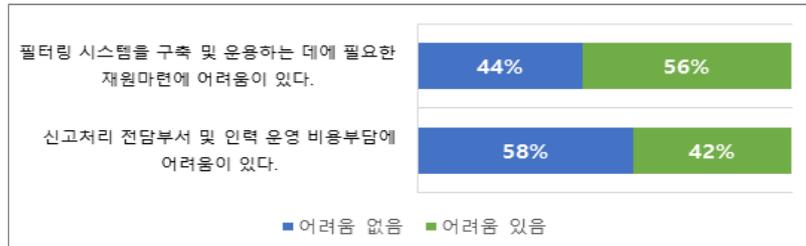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재정부담을 겪고 있다고 응답함

[그림 4-1] 조치의무사업자 조치의무 이행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



- **(지원 필요성 검토)** 의무조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보조금 지급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들을 타 분야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비용 지원을 위해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조항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현행 법 시행령의 '행정적 지원'을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혼하지는 않으나, 기술 및 장비 확보를 위한 비용부담이 큰 의무의 경우에 한해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타 분야에서도 발견됨
 - 특히 규모와 상관없이 지정되는 웹하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매출 대비 필터링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어, 조치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법령상 의무조치 이행의 경우라도 초기 도입비용이 크고 지속적인 기술 개선 필요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촉진을 위해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유사사례)** 초기 도입비용이 크고 지속적인 기술 개선 필요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의무이행 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짐
 - 법령상 명백한 지원근거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상 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과 같이 타 분야 사례에서도 법정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의무이행에 관한 비용이나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음
- 사례1.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 대표적인 예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2²⁸⁾에 따라 ‘재난 주관 방송사’로 지정된 KBS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례가 있는데, 재난방송은 KBS의 법정의무이지만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난방송 역량강화와 역할수행을 위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 2017년 7월 27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의 재난방송 인프라를 개선하여 신속·정확하게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5호²⁹⁾)을 근거로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총 5개 사업의 재정을 100% 지원함

<표 4-10> 재난 주관 방송사 지원사업 현황

내역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방식	2022년도 지원 비율(%)
수어방송 제작지원	한국방송공사	보조	100
재난 콘텐츠 제작 지원	한국방송공사	보조	100
지리정보 융합 재난 그래픽 표출 시스템 구축	한국방송공사	보조	100
재난미디어 활용 체계 강화	한국방송공사	보조	100
재난 CCTV 개방 활용	한국방송공사	보조	100

28)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이하 생략)

29)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사례2: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³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성 확보 조치 시행 의무가 부과됨
 - 단,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³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이때 지원의 범위를 ‘필요한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적 지원 이외의 지원까지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
- 사례3: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의 관리적 조치(에너지진단 의무) 이행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³²⁾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3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관리 의무가 부과됨
 - 이때, 동법 제32조제6항³³⁾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³⁴⁾에 따라, 특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 에너지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음
- 사례4: 영국의 IoT보안조치 등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프

-
- 30)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략)
 - 31)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2) 제32조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33) 제32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4) 시행령 제38조(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이하 “에너지진단비용”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 톤이오이 미만일 것

로그랩

-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 부(DCMS)’가 IoT제품 생산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안 조치 및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소비자 IoT 보안(CoP)에 대한 실행 강령(2018. 10.)과 PSTI법(제품 보안 및 통신 기반시설법)의 도입을 추진함
 - 이때, 새로운 법 도입으로 사업자들에게 보안 조치 이행 및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술적·재정적 부담이 예상되어, 이러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상사업자에게 의무이행과 관련한 비용을 보조하는 보조금(grant) 프로그램을 사전적으로 도입(2020. 5.)함
 - 해당 보조금은 법률상 명백한 지원 근거 조항은 없으나, 영국은 ‘국가안전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일환으로 주정부의 예산을 활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의무이행에 있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은 관련 기술 테스트 및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업당 연간 최대 £20만씩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2022)
- (개선방안) 법률상의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범자들의 법률 준수 및 의무이행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비용 지원도 제공할 수 있으며,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개정도 검토할 수 있음
- 법정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일지라고 의무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공은 가능하며, 타 분야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원과 관련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이 이뤄질 수 있음이 확인됨
 - 다만 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행령 제30조의6제4항의 ‘행정적 지원’을 ‘지원’으로 개정하여 포괄적인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표 4-11> 조치의무 이행 지원의 법률적 근거 강화를 위한 사업법 제22조의5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6(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 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6(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④ 지원

- 만약 행정적 지원은 모든 조치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비용지원의 대상은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자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을 개정하기 보다는 제7항의 비용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중소기업 한정 지원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함

<표 4-12> 중소기업 한정지원을 위한 사업법 제22조의5 및 시행령 제30조의6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6(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설></u>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6(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설></u>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조치 이행 비용”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검색제한 의무 이행 활동 지원

- (사업자 의견) 검색제한이 필요한 유해단어를 선정하는 노하우(know-how)와 경험이 부족한 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유해단어 선정을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오랫동안 검색엔진을 운영해왔고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하 KISO)등의 자율규제 기구에 가입된 기업(예: 포털사업자 및 검색엔진 사업자)들과 달리 중소기업 사업자들은 유해단어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노하우가 부재함
 - 현재 KISO는 음란이미지 해쉬값 DB이외에도, 욕설DB, 청소년 유해어 DB등을 구축하여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있음
 - 욕설 DB: KISO의 회원사가 제공한 욕설정보를 모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약 30만 건 이상의 욕설표현을 분류하여 DB화 함
 - 청소년 유해어 DB: 성인·음란콘텐츠 관련,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업소 관련, 사행성·불법행위 조장 관련, 잔혹·혐오성 관련 등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단어를 KISO의 회원사 의결에 따라 금칙어로 지정하고 DB화 함
 - 현재 88개 조치의무사업자 중에서 KISO의 회원사³⁵⁾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7개에 불과함
 - KISO의 회원사이면서도 조치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 유해단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들도 있어, 유해단어 선정과 관련한 역량 강화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원필요성 검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유해단어 제시하는 것

35) KISO회원사는 네이버, 카카오, 씨나인(오늘의 유머), 씨엘 커뮤니케이션즈(클리앙), SK 커뮤니케이션즈, 뽀뿌커뮤니케이션, 인벤, 인버전커뮤니티, 줌인터넷, 케이티알파, 파코즈하드웨어, 심심이, 레드홀릭스, 스캐터랩, 소프트트리에이아이 등 15개임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유해단어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 축적을 지원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보임

- 2003년 10월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단어 718개³⁶⁾를 선정하여 14개 포털사이트에 전달한 바 있음
- 당시 포털사이트들은 해당 718개의 단어들에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로 사업자들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종합한 것에 불과하고 포털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운용하던 유해단어가 보다 포괄적으로 새로운 권고안의 수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함(이선민, 2003. 11. 9.)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준 행정기구의 성격을 띤 위원회가 금칙어를 제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문제를 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됨(진보넷, 2004. 2. 9.)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조치의무사업자의 업무를 지원한다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정부 또는 준 행정기관이 유해단어를 제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국민 알 권리 침해라는 논란을 다시 한번 야기할 수 있음
-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의무와 책임은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있고,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의 선정과 DB구축 업무도 조치의무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함
- 다만, 신규로 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된 경우나 중소기업 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포털사이트들과 달리 검색단어 선정에 있어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더 부족할 수 있어, 유해단어DB를 관리하는 민간기구나 유해단어 선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학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율규제의 기반을 조성해주는 간접적인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음

○ (개선방안) 표현의 자유 및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검색제한 단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민간 시민단체나 학술단체, 사업자 자율규제기구 등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제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36) 해당 단어들은 기존 포털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603개 단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신조어 115개를 더하여 지정함

- 일차적으로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 인터넷상의 유해단어를 선정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민간의 학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조치의무사업자를 포함하여 일반 인터넷 사업자들의 유해단어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는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 활동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민간 시민단체가 불법촬영물 등에 사용되는 검색어를 발굴하고, 선정된 검색어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함
- 이외에도, 조치의무사업자와 관련된 자율규제기구가 불법촬영물 관련 검색어 DB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함
-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자율규제)³⁷⁾는 KISO와 같은 자율규제기구를 대상으로 동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의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불법촬영물 관련 검색어 DB구축 등도 제44조의4의제3항에 따른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으로 해석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보임
- 예를 들어, KISO가 청소년 유해어 단어와 별도로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사용되는 단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자율규제 활동을 한다면, 망법 제44조의4에 따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도 판단됨
 - KISO가 보유한 청소년 유해어 DB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검색할 경우 결과가 노출되지 않는 단어들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부과된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사용되는 단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 따라서 청소년 유해어와 별도로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사용되는 단어에 대한 식별 및 선정을 위한 별도의 활동이 필요함

37)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또는 조치의무사업자들이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여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 촬영물 등의 검색에 사용되는 단어인지를 판단하여 별도의 검색어 DB를 구축하고 관련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할 경우, 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때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가 자율규제기구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조항일뿐, 자율규제기구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사인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검색어DB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지원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다. 조치의무 이행 기술 지원

1) 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기술지원 강화

- (사업자 의견) DNA DB 적용과 필터링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호환성 문제가 있거나 제공되는 기술가이드만으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신속한 대응 및 협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특히, 자사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 필터링 업체에 의존하게 되는데, 필터링 기술, 성능, 시스템과의 정합성, 필터링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 기술지원이 필요함
 - 내부에서 선제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데이터셋의 공유, 또는 사전테스트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개선방안) 방통위-ETRI-방심위 협력으로 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하여,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이행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적 조치 이행과 관련한 기술상담, 컨설팅, 현장방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조치의무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기술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의무사업자가 아니라도 ‘불법촬영물’이나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기술지원을 할 수 있음

- (유사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와 관련하여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술지원센터’ 운영되고 있음
 - 안전조치의무 이행에 관한 ‘기술지원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술상담 및 온라인 컨설팅, 현장방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 4-13> 개인정보보호법 상 안전조치의무 관련 기술지원센터 운영 현황

기술 상담	기술 컨설팅	
	온라인 컨설팅	현장방문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법·제도 일반상담 및 질의에 대한 대응제공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수집·이용 동의, 내부관리계획, 위·수탁 계약 등 관리적 조치에 대한 안전성 진단 및 컨설팅 제공	기업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개인정보의 관리적 조치 뿐만 아니라 기술적·물리적 조치 전반에 대한 안전성 진단 및 컨설팅 제공
	* 신청기업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무 및 자가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컨설팅 방법(온라인 또는 현장방문)을 정하여 지원함	

2) 조치의무 이행과 관련한 가이드 개선

- (사업자 의견) 조치의무 이행과 관련한 가이드 내용의 명확성과 실용성이 미흡하고 단순 제도 설명에 불과함
 - 기술가이드 내용의 명확성과 실용성이 부족하고 해설서 외에는 행정서류 준비에 참조할 안내서가 부재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신고기능 마련으로 무관·허위 신고가 증가했으나, 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어 민원처리자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 ① 개발자 대상 기술안내서 강화, ② 담당자별 업무안내서 제작·배포 등 업무지원 강화 등으로 조치의무사업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자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의 행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무사업자 대상 지원이 필요함
 - 신규 조치의무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나, 조치의무대상자의 개발자와 민원담당자, 관

리자 등이 변경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민원담당자, 시스템 관리자 등 각 담당자별로 참조할 수 있는 업무 안내서가 필요함

- 불법촬영물 등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경우, 관리자가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조치 기준 해설서'만 있으며, 관리적 조치 이행을 위한 샘플, 안내서나 교육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반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경우 안내서와 교육자료를 개발자용과 관리자용으로 분리하여 제공하고 있음

<표 4-14> 지침 및 안내자료 제공현황 비교

구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지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고시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해설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기준 고시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해설서
업무 안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자, 관리자, 대상별 안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 - 시스템 개발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체크리스트 •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핸드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가이드 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필터링 기술 설치 가이드, 성능 평가 안내서, DNA DB 추출 인터페이스 안내문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주현 (2022. 11. 5.), 아동성착취물 배포, 위장수사로 잡았다...8개월간 사이버성폭력 1694명,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1508454945942>
- 곽재훈 (2022. 9. 2.), '제2의 n번방' 사건에 국민의힘·한동훈 나섰지만...,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90216271740508>
- 국제 엠네스티 (2022. 12. 8.), 한국: 확산하는 디지털 성착취물-구글의 실패를 지적하는 생존자들, 보도자료, <https://amnesty.or.kr/49614/>
- 김선애 (2017. 5. 25.), [ISMS④] “ISMS 투자 비용보다 과태료가 더 적다”, 데이터넷
- 뉴스시스 (2022. 3. 29.),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서울시와 연계 추진, 뉴스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9_0001811500
- 뉴스시스 (2022. 7. 9.), N번방 사건 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정보 증가세...이유는?, 뉴스시스
- 방송통신위원회 (2022. 12. 7.),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를 위해 관계부처 힘 모은다, 보도자료.
- 배혜란 (2022), 『2030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
- 서울기술연구원 (2022. 7. 8.),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자동검색~삭제하는 AI기술 지자체 최초 개발, 서울솔루션, <https://seoulsolution.kr/ko/content/9646>
- 연합뉴스 (2022. 10. 17.), “트위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온상...신고 10건 중 9건”,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AKR20221014112900017>
- 이선민 (2003. 11. 5.), 정통윤·포털 ‘검색 금칙어’ 718개 선정,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51>
- 이지윤 (2022. 11. 30.),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7개월...270명에 영상삭제 등 통합지원, 『환경미디어』, <http://m.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3775569434>
- 장윤식 외 (2020), 사이버범죄 예방활동 효과성 측정 및 개선방안, 『치안논총 제36집
- 진보넷 (2004. 2. 9.), 정통윤·포털 ‘검색 금칙어’ 718개 선정, 『정보인권』,

<https://act.jinbo.net/wp/629/>

천혜선 (2022). 유럽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방송통신심의동향』, 24호, 86-9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 4).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허준범 (2019. 9. 7.). [민후의 기·꼭·법]저작권 침해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면책 요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464218?sid=105>

해외 문헌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2020. 5. 29.). “Ensuring that schemes are accessible and affordable to all manufacturers including start-ups and SMEs” .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74408/Application_pack_for_IoT_Assurance_Schemes_grant_V2.pdf

BBC (2021. 6. 21.). “Online Safety Bill ‘catastrophic for free speech’ ” , <https://www.bbc.com/news/technology-57569336>

Euro Stat (2021, 8, 2). “Population by country” . <https://ec.europa.eu/>

● 저 자 소 개 ●

천 혜 선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 뉴욕주립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박사
- 현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윤 금 낭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석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박사수료
- 현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노 창 희

- 단국대학교 영어영문과 졸업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 현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 수 연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 현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KCC-2022-18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조치 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

2022년 12월 일 인쇄

2022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
